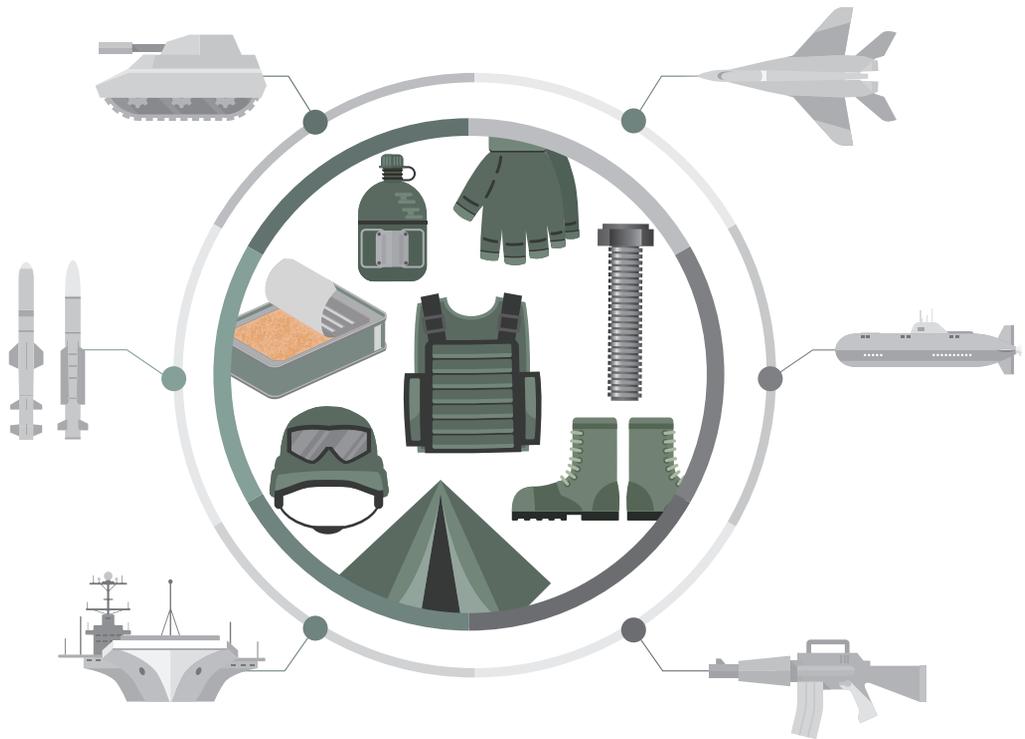


#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이현철



##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사업평가 16-22(통권 377호)

##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총괄 |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기획·조정 | 조신국 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 이현철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원 | 박미현 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02) 788-4749 | peb4@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이 현 철

2016. 11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11.1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최근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위협으로 국방전력 특히 무기체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국방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종래의 비무기체계)와 관련된 철저한 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력지원체계 가운데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자 등은 무기체계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방전력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는 양대축에 대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속도는 아직 무기체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조달 지연 및 실패, 성능 미충족·불량품 납품, 부정사례 반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강구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국제관계 및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및 계획 수립·집행 등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매우 복잡다기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권·재산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방전력의 어느 한 부분도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아니된다는 불변의 원칙 아래 이번 평가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부디 본 사업평가보고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 요 약

### □ 평가목적 및 방법

- 무기체계 조달과 더불어 국방조달의 양대축을 이루는 전력지원체계(종래의 비무기체계) 조달 사업을 평가하여 국방전력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국방 전력지원체계 예산은 군수품의 경우, 2015년 6.5조원, 2016년 6.4조원, 2017년 6.6조원 규모임.
  - 국방시설은 2015년 1.6조원, 2016년 1.4조원, 2017년 1.5조원 규모임.
- 본 보고서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조달계획의 합리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납품의 적기성, 품질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설공사는 계약주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시조달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평가하되, 계약 및 납품관리 평가는 전력지원체계의 대부분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을 주된 대상으로 함.

### □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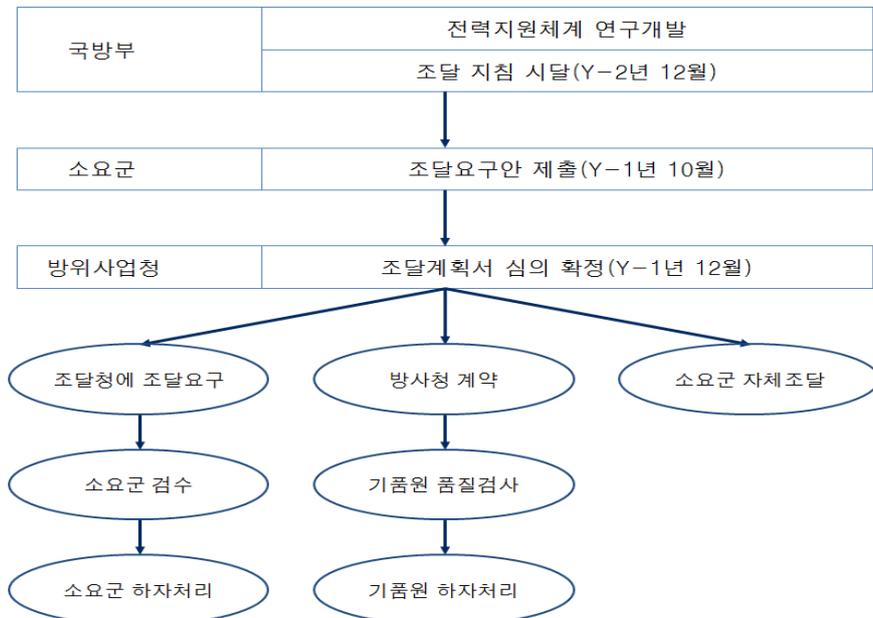
- 군수품 조달체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및 조달품목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당사자인 부대의 직접조달(각군 및 국군재정관리단)보다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 조달을 확대하도록 조달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무기체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급식유류, 물자 등의 품목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조달청으로 조달기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달계획 작성 시, 각군 특히 육군의 경우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수량을 재점검하는 한편, 예산안과 연계하여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을 억제하고 긴급 품목 구입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 비중을 축소하는 등 군수품 계약방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국방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측면(금액기준 71.4%)이 있지만, 급식유류(38.2%), 물자(56.5%) 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자활용사촌 등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체들의 생산설비·능력과 단체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자활용사촌의 수의계약액이 전체 국가유공자 수의계약 가운데 66.6% 점유).
-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하여는 진입장벽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 가운데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선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도입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의 적기성과 품질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조달실패,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의 장기간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무기체계 가동 저해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품질보증 등 소요군의 사용자불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하자 등에 대한 사후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낙후된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연구·기획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시설공사계약의 주체를 수요당사자인 각군이나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 등)가 아닌 조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 국방부와 조달청 간의 협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단, 현행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달청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 「방위사업법」상 군수품과 시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며,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
  -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조직상·예산상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됨.
-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에 소요되는 최근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7.9~8.1조원 수준임.
  - 군수품은 2015년 6조 5,289억원, 2016년 6조 4,652억원, 2017년안 6조 6,273억원임.
  - 국방시설은 2015년 1조 6,044억원, 2016년 1조 4,702억원, 2017년안 1조 5,407억원임.
- 군수품의 조달은 조달계획서 작성, 계약, 품질검사, 하자처리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본 보고서에서 계약 및 품질검사 등은 대부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의 실적(2013~2015년)을 중심으로 평가함.
- 시설공사는 이와 별도로 계약주체를 중심으로 평가함.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 5. 11), 2016.

## 2. 군수품 조달계획 분석

### 가. 조달기관 등 군수품 조달체계 부적정

- 「방위사업법」에 따른 조달기관은 방위사업청 등 3개 기관으로서 2016년 현재 기관별 조달품목은 다음과 같음.

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

조달기관		조달품목 유형
방위사업청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무기부품, 교육용 탄약, 군용트럭 등) 물자(일반보급품, 피복 등), 급식유류 등
부대 조달	각군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야채, 어류 등/농수협 지역조합 계약) 단위품목당 3,000만원 미만의 소액 품목(용역 포함) 단위품목당 3,000만원 이상의 부대조달실적이 있는 예외 품목 등
	국군재정관리단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조달청		단위품목당 5,000만원 이상 상용품, 단가계약품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 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 2016. (일부보완)

- 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당사자인 부대의 직접조달(각군 및 국군재정관리단)보다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의 조달비중을 확대하는 등 조달기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청의 조달비중은 2006년 88.2%에서 2015년 72.9%로 감소하였고, 조달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8% 수준이었다가 2013년부터 16%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대조달은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에 10.2%로 증가함.
- 특히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가운데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에 주력하고, 급식유류, 물자 등은 조달청 요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6년도 방위사업청 급식유류 조달계획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급식	유류	의무물자	공병물자	윤활유 등
품목수(계약수)	153	115	6	8	6	18
조달금액	7,807	3,771	3,692	75	80	189

자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팀 간담회 자료」, 2016년 방위사업 조달기업 간담회, 2016.

## 나. 전투긴요 수리부속 조달 부진

-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외부의 수리부속 공급이 없어도 개전 초기 일정기간 (60일) 전투장비의 가동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축해야 하는 수리부속임.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조달에 관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6조 (조달원칙)는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를 확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달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여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을 제고하여야 함.
  - 2015년 기준 전체 확보율은 수량 기준으로 전체 42.1%(금액기준으로는 23.9%)이며, 군별로는 육군 36.6%(금액기준 17.5%), 해군 93.1%(금액기준 73.2%), 공군 99.4%(금액기준 90.6%)임.
  - 특히 육군의 경우 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표수량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목표조정을 포함해서 확보율 제고가 필요함.

전투긴요수리부속 보유현황

(단위: 종, 점, 억원, %)

구분	2014			2015			
	목표(A)	확보(B)	비율(B/A)	목표(A)	확보(B)	비율(B/A)	
육군	품목	789	638	(80.9)	620	431	(69.5)
	수량	853,019	185,958	(21.8)	409,235	149,813	(36.6)
	금액	11,940	1,946	(16.3)	9,135	1,599	(17.5)
해군	품목	1,067	708	(66.4)	1,067	818	(76.7)
	수량	4,198	3,149	(75.0)	4,244	3,952	(93.1)
	금액	281	171	(60.9)	287	210	(73.2)
공군	품목	1,019	1,006	(98.7)	1,019	1,004	(98.5)
	수량	35,417	35,063	(99.0)	35,417	35,212	(99.4)
	금액	657	594	(90.4)	657	595	(90.6)
계	품목	2,875	2,352	(81.8)	2,706	2,253	(83.3)
	수량	892,634	224,170	(25.1)	448,896	188,977	(42.1)
	금액	12,878	2,711	(21.1)	10,079	2,404	(23.9)

주: 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단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3. 군수품 계약관리 분석

#### 가. 수의계약 비중 과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불균형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의 계약(금액기준) 8조 8,129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6조 2,892억원으로 71.4%(건수기준으로 5,395건 가운데 63.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장비 93.5%, 항공기 99.1%, 유도무기 93.9%, 함정 83.2% 등 무기체계와 직접 연결된 전력지원체계 등 일반상용품과 다른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방위사업청 계약방법별 실적(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단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2단계경쟁	협상	계
건	3,428	806	1,147	6	1	7	5,395
%	(63.5)	(14.9)	(21.3)	(0.1)	(0.0)	(0.1)	(100)
금액	62,892	15,277	8,433	589	4	935	88,129
%	(71.4)	(17.3)	(9.6)	(0.7)	(0.0)	(1.1)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그러나 품목유형(금액기준) 중에 급식유류 38.2%, 물자 56.5% 등 일반 상용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도 수의계약 비율이 높음(조달청의 물품구매 수의계약 비율은 12.7%).
  -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 사유 가운데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대부분 일반경쟁을 위한 공고를 하였지만 응찰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불가피한 점은 있음.
  - 응찰자 확대를 위하여 경직된 국방규격을 개선하거나 선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단체 등 지원은 규모 및 단체별 배분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 목적에 차이가 있지만 조달청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전체 수의계약액 대비 3.8%를 차지하며, 방위사업청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은 약

8.0%로, 조달청 대비 4.2%p 높은 수준임.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가운데 자활용사촌(2016년 9월 현재 582가구, 가족수 1,172명, 18개)과의 수의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액 가운데 66.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체들의 생산설비·능력 및 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단체 수의계약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가목(자활용사촌)	나목(상이단체)	다목(중증장애인)	라목(사회복지법인)	합계	
급식 유류	계약건수	11	34	0	6	51
	계약금액	485	403	0	63	951
물자	계약건수	83	19	59	36	197
	계약금액	2,861	304	484	388	4,037
통신 장비	계약건수	0	3	0	0	3
	계약금액	0	39	0	0	39
계	계약건수	94	56	59	42	251
	계약금액	3,346(66.6)	746(14.8)	484(9.6)	451(9.0)	5,027(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나. 동일업체 반복계약 과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의 계약건수는 5,395건이고 계약업체수는 771개로서, 업체당 약 7.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일업체와 1회만 계약한 건수는 214건(4.0%)이며, 2~5회는 1,002건(18.6%), 6~10회는 831건(15.4%), 11~50회는 2,162건(40.1%), 51~100회는 666건(12.3%), 100회 이상은 520건(9.6%)임.

#### 방위사업청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단위: 개, 건, %)

계약회수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
계약업체수	214	326	113	104	10	4	771
(A)	(27.8)	(42.3)	(14.7)	(13.5)	(1.3)	(0.5)	(100)
계약건수	214	1,002	831	2,162	666	520	5,395
(B)	(4.0)	(18.6)	(15.4)	(40.1)	(12.3)	(9.6)	(100)
(B/A)	1.0	3.1	7.4	20.8	66.6	130.0	7.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경쟁계약에서도 업체당 약 2.6건이 발생하였음.
  - 일반경쟁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의 1회 계약은 164건(20.3%), 2~5회는 335건(41.6%), 6~10회는 131건(16.3%), 11~50회는 176건(21.8%)임.
  - 특히 동일업체가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로서 건당 10억원 이상인 계약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참기름, 치즈, 주스, 엔진용 윤활유 등 일반상용품 등을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 일반경쟁계약 업체당 계약회수 현황

(단위: 개, 건, %)

계약회수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
계약업체수	164	120	18	9	0	0	311
(A)	(52.7)	(38.6)	(5.8)	(2.9)	(0.0)	(0.0)	(100)
계약건수	164	335	131	176	0	0	806
(B)	(20.3)	(41.6)	(16.3)	(21.8)	(0.0)	(0.0)	(100)
(B/A)	1.0	2.8	7.3	19.6	-	-	2.6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의 동일품목 1회 계약은 164건(4.8%), 2~5회는 651건(19.0%), 6~10회는 393건(11.5%), 11~50회는 1,419건(41.4%), 51~100회는 503건(14.7%), 100회 이상은 298건(8.7%)임.

방위사업청 수의계약 업체당 계약회수 현황

(단위: 개, 건, %)

계약회수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
계약업체수	164	218	53	67	7	2	511
(A)	(32.1)	(42.7)	(10.4)	(13.1)	(1.4)	(0.4)	(100)
계약건수	164	651	393	1,419	503	298	3,428
(B)	(4.8)	(19.0)	(11.5)	(41.4)	(14.7)	(8.7)	(100)
(B/A)	1.0	3.0	7.4	21.2	71.9	149.0	6.7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동일업체와 반복계약할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으나,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서 동일품목을 동일업체와 반복계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반복적인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해당업체와 적기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즉각대응이 제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고 있는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선별적인 장기계속계약 도입을 통해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군수품 납품 및 품질관리 분석

##### 가. 계약해제·해지 등 조달 실패

-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중앙조달) 계약 해제·해지가 132건 발생하였음.
  - 계약업체 스스로 포기한 계약이 74건(364억원), 생산능력부족으로 방위사업청이 해제·해지한 계약이 40건(93억원)임.

방위사업청 계약 해제·해지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계
계약포기	계약건수	32	20	22	74
	계약금액	112	118	134	364
능력부족	계약건수	18	17	5	40
	계약금액	33	51	9	93
기타	계약건수	7	6	5	18
	계약금액	6	30	14	50
계	계약건수	57	43	32	132
	계약금액	151	199	156	507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각군 조달 가운데 규모가 큰 육군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가 205건 발생하였으며, 해제·해지 사유는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이 186건(112억원)으로 90.7%를 차지함.
- 계약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 단계에서부터 업체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이는 군수품의 적기 조달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규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확인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군수품 납기 지연 사례 반복

- 중앙조달품목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납기 지연은 총 1,293건으로 1조 4,310억원 규모임.
  - 구매 품목의 납기 지연은 총 113건(625억원)으로 30일 이내 32건(75억원), 31~90일 지연 27건(319억원), 91~180일 지연 21건(69억원)이며, 180일 초과도 33건(162억원)임.
  - 제조 품목의 납기 지연은 총 1,180건(1조 3,685억원)으로 30일 이내 250건(2,495억원), 31~90일 지연 410건(3,258억원), 91~180일 지연 427건(6,697억원)이며, 180일 초과도 93건(1,235억원)임.

납기 지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단위	30일이내	31-90일	91-180일	180일초과	소계
구매	계약건수	32	27	21	33	113
	계약금액	75	319	69	162	625
제조	계약건수	250	410	427	93	1,180
	계약금액	2,495	3,258	6,697	1,235	13,685
계	계약건수	282	437	448	126	1,293
	계약금액	2,570	3,577	6,766	1,397	14,31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의 납기 지연으로 무기체계 가동 지장 우려
  - 구매 품목의 납기지연은 기동화력 16건(50.5억원), 지휘정찰 5건(16.0억원), 함정 11건(28.3억원), 유도무기 16건(20.0억원)임.
    - 180일 초과 지연도 기동화력 3건(2.5억원), 지휘정찰 2건(14.7억원), 함정 4건(16.8억원), 유도무기 3건(2.9억원)임.
  - 제조 품목의 납기지연은 기동화력 113건(567억원), 지휘정찰 20건(91억원), 함정 56건(449억원), 항공기 32건(1,307억원), 유도무기 56건(408억원)임.
    - 180일 초과 지연도 기동화력 16건(37억원), 지휘정찰 6건(57억원), 함정 5건(3.4억원), 항공기 4건(137억원), 유도무기 7건(11억원)임.
  - 특히, 180일 이상 장기 지연 품목에는 함정, 자주포 하우징류, 천마 탐지추적장치 부품정비, 지상감시레이더, 항공기 등 주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무기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불만 및 사후처리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 최근 3년간 품질보증절차를 거쳐 납품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용자불만은 총 393건임.
  - 사용자불만 원인은 하자가 145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가 132건(33.6%), 개량요구 47건(12.0%), 통보착오 26건(6.6%), 운용미흡 24건(6.1%), 규격미흡 16건(4.1%), 계약착오 3건(0.8%) 등의 순임.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현황

(단위: 건, %)

구분	하자	규격미흡	개량요구	계약착오	운용미흡	통보착오	기타	계
2013	53	6	13	1	8	12	33	126
	(42.1)	(4.8)	(10.3)	(0.8)	(6.3)	(9.5)	(26.2)	(100)
2014	53	7	15	0	8	10	53	146
	(36.3)	(4.8)	(10.3)	(0.0)	(5.5)	(6.8)	(36.3)	(100)
2015	39	3	19	2	8	4	46	121
	(32.2)	(2.5)	(15.7)	(1.7)	(6.6)	(3.3)	(38.0)	(100)
계	145	16	47	3	24	26	132	393
	(36.9)	(4.1)	(12.0)	(0.8)	(6.1)	(6.6)	(33.6)	(100)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품목유형별로는 식품이 133건(34.0%)으로 사용자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트럭 등 군의 기동력과 관련된 장륜차량이 115건(29.4%)임.
-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이 적용된 사용자불만이 289건(74.1%)로 가장 많음.
  -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의 사용자불만 원인 중 ‘하자’가 110건으로 전체 145건 중 75.9%를 차지함.
  -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인 전투조끼류와 같이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업체의 동일품목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납품에 대하여 일부는 하자로 처리하고 일부는 수요군의 운용미흡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5. 군수품 연구개발(R&D) 분석

### 가. 국방규격의 낙후

- 국방규격은 제품의 품질개선, 생산능률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함.
  - 최근 침낭 등 낙후된 국방규격으로 인한 군수품 성능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생산기술 및 사회문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방규격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규격의 제·개정 내지 폐지(상용품 전환 등)는 군수품의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규격 오류로 인한 군수품 조달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음.
  - 국방규격 제·개정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미만 규격이 2,683종으로 34.0%이며, 10년이상 20년미만 규격은 2,254종으로 28.5%임.
  - 20년 이상된 규격은 2,961종으로 37.5%이며, 40년 이상된 규격 또한 494건으로 6.3%임.

국방규격 제·개정일별 현황(2016.08.31.기준)

(단위: 종, %)

기관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40년미만	40년이상	계
방위사업청	729 (52.3)	262 (18.8)	184 (13.2)	153 (11.0)	67 (4.8)	1,395 (100)
육군	609 (33.8)	612 (34.0)	211 (11.7)	312 (17.3)	56 (3.1)	1,800 (100)
해군	336 (28.9)	545 (46.8)	126 (10.8)	148 (12.7)	9 (0.8)	1,164 (100)
공군	123 (17.2)	258 (36.0)	207 (28.9)	98 (13.7)	31 (4.3)	717 (100)
국방과학연구소	691 (28.3)	397 (16.3)	497 (20.4)	523 (21.4)	331 (13.6)	2,439 (100)
국방기술품질원	195 (50.9)	180 (47.0)	8 (2.1)	0 (0.0)	0 (0.0)	383 (100)
총계	2,683 (34.0)	2,254 (28.5)	1,233 (15.6)	1,234 (15.6)	494 (6.3)	7,898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 국방규격 개선 등을 포함한 군수품 연구개발은 정부투자, 업체투자, 정부·업체공동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업체투자연구개발은 그동안 사업이 중단(다목적 연결형 천막 등)되거나, 비용 상승 등(전투용 배낭 등)의 문제가 있어 왔음.
  - 최근 3년간 4건 가운데 2건은 중단 또는 취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임.

업체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진행내용
LED 섬광등 세트	2013.02.26.~2014.08.30.	1.8	진행중
GPS 재밍대응 신호처리 장치	2013.12.31.~2016.07.31.	3.6	진행중
○○○ 추진기	2014.06.11.~2016.06.10.	3.5	일시중단
적층형 부력재 이용한 구멍의	2015.01.08.~2017.03.07.	1.1	중단

주: 1. ○○○ 추진기: 업체 특혜의혹(동종 업체 민원제기)으로 연구개발 일시중단(16. 6월) 상태  
 2. 적층형 부력재 이용한 구멍의: 업체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연구 개발 취소(사업관리 실무위원회), '16.9.2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2016년 현재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은 없으며 정부투자연구개발(각군 시행)은 최근 3년간 32건 중 완료 20건, 진행 중 11건, 중단 1건임.

정부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단위	완료	진행중	중단	계
신규개발	건	2	7	1	10
	예산	7.3	57.5	11.1	75.9
성능개량 (품질개선)	건	0	2	0	2
	예산	0.0	6.5	0.0	6.5
기술개발	건	0	2	0	2
	예산	0.0	22.3	0.0	22.3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건	14	0	0	14
	예산	6.1	0.0	0.0	6.1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건	4	0	0	4
	예산	2.9	0	0.0	2.9

주: 중단 과제: 함상복 함상화 소재개발, 업체 계약 불이행(원단 소재 개발목표 미달성, 시제품 미제시)으로 사업중단 및 계약 해지(16.7.2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연구·기획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육군 획득군수차관실 예하의 PEO Soldier와 물자사령부 예하의 NSSC(Natick Soldier Systems Center), 프랑스 군합동조달국 산하의 연구제작국 등의 사례가 있음.

## 6. 시설공사 조달계약

- 국방시설공사 계약은 2011년까지 각군에서 직접 수행해 오다가, 2012년에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를 설치하여 2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계약을 체결하게 한바, 공정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군재정관리단의 전력지원체계에 속한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3,756건에 4조 700억원임.

국군재정관리단의 시설공사 계약실적(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2013	2014	2015	계
건수	1,384	1,176	1,196	3,756
금액	16,188	12,565	11,947	40,700

자료: 국군재정관리단 제출자료

- 그러나 본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설공사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은 수요기관으로서 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단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은 “국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는 일반시설공사 계약체결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특수성으로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 등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 국가기관과 달리 부대조달하되,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군이 평시에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조직으로서 전시조달의 연속성 및 지속성 보장 등을 감안하여 시설공사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방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국방부와 조달청은 2005년에 군의 일반시설공사를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협정을 체결한바 있지만,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음.

####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2005년)

<p>제1조(목적) 이 협정은 국방부와 조달청 간에 군 일반시설공사를 조달청이 계약 체결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달요청의 범위 및 조달수수료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조달요청의 범위) ① 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과 육·해·공군본부를 포함한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군용시설 이전공사와 전력투자공사를 제외한 일반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2.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3. 기타 국방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직접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li> </ol>
--

-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도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하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달청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결론

- 일반적으로 조달사업에 있어서는 품질의 우수성, 적기성, 공정성, 효율성(투명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지원체계 등 국방조달에 있어서는 품질의 우수성과 적기성 등이 군수품과 시설 조달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함.

- 첫째, 군수품 조달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서 조달기관 및 조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당사자인 부대와 공급자인 공급업체 간의 직접계약보다 제3자인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을 우선하도록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부대조달을 축소하는 한편 급식유류, 물자 등의 품목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조달청으로 조달기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휴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목표수량 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육군의 경우 조달계획 작성단계부터 예산안과 연계하여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을 억제하고,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비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군수품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중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방의 특성상 수의계약의 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급식유류, 물자 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특히 수의계약 가운데 자활용사촌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체들의 생산설비·능력과 단체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다른 보상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일업체 반복계약도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 가운데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이행보다 선별적인 장기계속계약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납기의 적기성 및 군수품의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낙찰기업의 계약포기 혹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생산 확인을 강화하여야 함.
  - 납기를 180일 이상을 초과하는 등 납품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전투지원 장비(부품) 등 납품의 지연으로 무기체계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
  -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인 제Ⅲ형에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동일제품을 다르게 조치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 넷째, 품질의 우수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낙후된 국방규격을 정비하여야 하며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공사 계약주체를 수요당사자인 부대,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가 아닌 조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현행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달청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 례

I. 평가 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	1
2. 평가범위 및 방법 .....	2
3. 주요쟁점 .....	3
II.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 5	
1. 사업 개요 .....	5
2. 사업 추진체계 .....	7
3. 재정투입 규모 .....	9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 11	
1. 군수품 조달계획 분석 .....	11
가. 조달계획 개요 .....	11
나. 조달기관 등 군수품 조달체계 부적정 .....	12
다. 전투긴요 수리부속 등 조달 부진 .....	17
2. 군수품 계약관리 분석 .....	19
가. 계약관리 개요 .....	19
나. 수의계약 비중 과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불균형 .....	20
다. 동일업체 반복계약 과다 .....	28
3. 군수품 납품 및 품질관리 분석 .....	35
가. 품질관리의 개요 .....	35
나. 계약해제·해지 등 조달 실패 .....	39
다. 군수품 납기 지연 사례 반복 .....	44
라. 사용자 불만 및 사후처리 객관성·공정성 미흡 .....	50
4. 군수품 연구개발(R&D) 분석 .....	58
가. 연구개발 개요 .....	58
나. 국방규격의 낙후 .....	59
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	62

5. 시설공사 조달계약 .....	68
가. 시설공사 개요 .....	68
나. 시설공사 조달주체 부적정 .....	70

IV. 결론 / 75

참고문헌 / 79

부록 / 81

## 표 차례

[표 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정의 및 분류체계 .....	6
[표 2] 조달기관별 임무 .....	8
[표 3] 전력지원체계 예·결산 현황 .....	10
[표 4] 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 .....	13
[표 5] 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 .....	14
[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 .....	15
[표 7] 2016년도 방위사업청 급식유류 조달계획 .....	15
[표 8] 부대 직접 조달 근거규정 .....	16
[표 9]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	18
[표 10] 「국가계약법」 등의 계약방법 .....	20
[표 11] 방위사업청 계약방법별 실적(2013~2015년) .....	21
[표 12] 조달청의 계약방법별 현황 .....	22
[표 13] 방위사업청 품목유형별 계약방법(2013~2015년) .....	23
[표 14] 방위사업청의 품목유형별 및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2013~2015년) ..	25
[표 15]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수의계약 비교(2013~2015년) .....	26
[표 16]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단체 수의계약 현황(2013~2015년) .....	27
[표 17]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	28
[표 18] 일반경쟁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	29
[표 19] 일반경쟁 동일업체 반복계약(건당 10억원 이상) 현황 .....	29
[표 20] 수의계약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	31
[표 21]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건당 10억원 이상) 현황	31
[표 22] 조달청 업무단계별 품질관리 프로세스 .....	36
[표 23] 품질보증형태 분류 .....	39
[표 24] 방위사업청 계약 해제·해지 현황(2013~2015년) .....	40
[표 25] 육군 계약 해제·해지 현황(2013~2015년) .....	40
[표 26]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업체 생산능력 확인 불일치율 추이 .....	42
[표 27] 조달청(조달품질원) 직접생산 확인 부적합률 추이 .....	42
[표 28] 기존 납품업체 계약 해제·해지 사례 .....	43
[표 29]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	45
[표 30] 구매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	46

[표 31]	구매 분야별·연도별 납기 지연 현황 .....	47
[표 32]	제조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	48
[표 33]	제조 분야별·연도별 납기 지연 현황 .....	49
[표 34]	품질보증을 위한 시정조치 방법 .....	50
[표 35]	국방기술품질원 시정조치 현황 .....	51
[표 36]	사용자불만 분류 .....	52
[표 37]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현황 .....	53
[표 38]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처리 현황 .....	53
[표 39]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품류별 사용자불만 현황 .....	54
[표 40]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품질보증형태별 현황 .....	55
[표 41]	조끼, 지상근무자용(기본형) 품질보증 결과 .....	56
[표 42]	동일 업체 계약 품목에 대한 하자 반복 발생 현황 .....	56
[표 43]	동일 업체 계약 품목에 대한 결함내용 및 처리방법 상이 현황 .....	57
[표 44]	국방규격 현황(2016.08.31.기준) .....	60
[표 45]	국방규격 개정 현황(2016.08.31.기준) .....	60
[표 46]	국방규격 제·개정일별 현황(2016.08.31.기준) .....	61
[표 47]	전력지원체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의 문제점 .....	63
[표 48]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및 양산 실패 사례 .....	63
[표 49]	전력지원체계 양산단가 과다 상승 및 개발·전력화 지연 사례 .....	64
[표 50]	업체투자연구개발의 전력화 지연 사례 .....	65
[표 51]	업체투자연구개발 현황 .....	65
[표 52]	업체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	66
[표 53]	정부투자연구개발 현황 .....	66
[표 54]	정부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	67
[표 55]	국군재정관리단 시설공사 현황 .....	70
[표 56]	국군재정관리단 시설계약 근거규정 .....	72
[표 57]	최근 3년간 국방 분야 조달청 시설계약요청 실적(2015.12.22.기준) .....	72
[표 58]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	73

## 그림 차례

[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 .....	8
[그림 2]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 .....	37



# I. 평가 개요

## 1. 평가배경 및 목적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국방전력 특히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에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사태를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방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기체계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래 국방전력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비무기체계, 즉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한 군수품과 시설, 인력, 교육훈련, 교리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지원체계 가운데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자 등은 무기체계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sup>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부품이 없거나 조종사의 장비가 불량해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더불어 전력지원체계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방전력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자체평가이다.<sup>2)</sup>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잇을 만하면 발생해 온 방산비리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장병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조달실패, 성능 미충족·불량품 납품, 부정사례 반복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강구함으로써 국방전력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유형근 외,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6, 87쪽.

2)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97쪽.

## 2. 평가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전시를 제외한 평시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본래 군수품은 '획득'이라는 과정을 거쳐 소요를 충족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제5호<sup>3)</sup>는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획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범용성을 감안하여 조달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조달과정을 감안하여 군수품의 평가에 있어서는 구매와 연구개발·생산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군수품의 구매는 방위사업청·각군·조달청이 주체가 되어 계약하고 있는데 사업량과 통계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설공사내역보다는 계약주체, 즉 조달기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방시설 가운데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영시설 등으로서 전력지원체계 가운데 기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계획, 조달계약, 납품 및 품질관리 그리고 군수품 연구개발과 국방시설 공사계약을 단계별·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단계별 평가기준은 조달계획의 합리성, 계약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납품의 적기성, 품질의 우수성 등이다.

평가과정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국내외 관련 논문 등 선행 연구,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군, 조달청의 제출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계약과 납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계약 혹은 품질보증활동 건별 자료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방 전력지원체계 계약, 품질보증, 사용자불만 등 분석에 있어서는 빈도 및 비율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특히 2016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설한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방 분야의 보안상 특성 그리고 조직의 방대함과 다양성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연구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3) 「방위사업법」 제3조제5호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입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3. 주요쟁점

군수품과 관련된 조달계획에서는 조달품목의 우선순위 및 조달기관 배분의 공정성, 계약관리 단계에서는 계약과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납품 및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납품의 적기성, 품질의 우수성, 국방규격과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시설공사의 계약주체 즉 조달기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에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부대조달과 조달청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 조달에 있어서 국방획득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용품을 중심으로 조달청조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과정에서 모든 정부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군수품은 그 특성상 방산물자 등의 사유로 일반경쟁만을 통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 비율이 크지만, 수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있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계약관리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형전투복 불량, 기능성 전투화 접착 분리 등 그동안 불량 군수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적정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달되는 군수품의 적정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납품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수품의 품질관리단계에서 납품시기의 적정성, 품질의 우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개발은 군에 적정한 군수품의 개발 및 낙후된 군수품의 개량을 통해 군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은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규격, 연구개발 추진 성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시설공사는 사실상 모든 계약을 부대조달로 각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투명성)의 관점에서 조달청에 요청하여 수행할 필요성 등 시설공사 조달기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Ⅱ.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 1. 사업 개요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는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조직상·예산상 크게 군수품<sup>4)</sup>과 시설<sup>5)</sup>로 구분된다.

특히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자 등으로서(시설공사는 기타에 포함) 전투원을 보호하고 생존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무기체계의 성능 발휘 및 지속능력을 유지해 전투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sup>6)</sup>

이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 그리고 예산상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나 부품이 전력지원체계로 재분류되는 등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하여 전력화에 지연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K-11복합형 소총과 이에 소요되는 2차 전지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각각 분리·개발되어 력화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가 있다. 일부 연구는 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성이 작거나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발비 제한 등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성능 발휘에 제한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 “군수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법률」 제2조(정의)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진지(陣地) 구축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 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신인호,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한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 「국방저널」 통권 제484호(2014년 4월), 국방홍보원, 2014, 16쪽.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sup>8)</sup>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에 비하여 상용화된 민간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대외홍보와 민간의 협력이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표 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정의 및 분류체계

구분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정의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
분류	(8대 분야) ①지휘통제·통신, ②감시·정찰, ③기동, ④함정, ⑤항공, ⑥화력, ⑦방호, ⑧기타	(7대 분야) ①전투지원장비(부품), ②전투지원물자, ③의무지원물품, ④교육훈련물품, ⑤국방정보시스템, ⑥일반시설 ⑦기타(무기체계 미분류 체계)
특징	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고단가, 적은 수량	낮은 단가, 많은 수량
	개발시 장기간 소요	단기간에 개발 가능
	고도의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진 기술의 집약체	상용화된 기술을 군수품에 접목하여 제품개발
	대부분의 기술을 직접 개발	<b>상용화된 민간기술 활용</b>
	군사기밀, 개발지 군사보안 중요	<b>대외홍보, 민과의 협력이 중요</b>
	전시·훈련시 사용	전시·훈련시 + 평상시 사용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
민·군 협력분야 다소 제한	<b>민·군 협력분야 다양</b>	

자료: 국방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장병들을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설립」, 국방부, 2016.

- 7) 김영건 외,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5, 42쪽.  
 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 결정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 추진체계

「방위사업법」 제25조제1항<sup>9)</sup>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계획은 조달 요인 즉, 조달 예산, 조달 품목, 품질, 수량, 시기, 가격, 조달원(조달기관) 및 조달 방법 등 제반 조달 조건을 포함하는 조달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매년 국방부가 전력지원체계 조달과 관련하여 전전년도 12월까지 조달지침을 시달한다. 각 소요군에서는 전년도 10월까지 조달요구안을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조달계획서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3항<sup>10)</sup>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협의는 조달계획 작성과정에 조달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조달계획에 따른다. 각군 등은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기관의 결정은 조달계획으로 결정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sup>11)</sup>은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계약 이후 납품과정에서는 방위사업청 계약분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일부 소요군)이 품질검사와 하자처리를 하고, 조달청 조달요구분에 대하여는 소요군이 검수와 하자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국방시설공사 계약은 20억원 미만 규모는 각군이 직접 조달하고, 이를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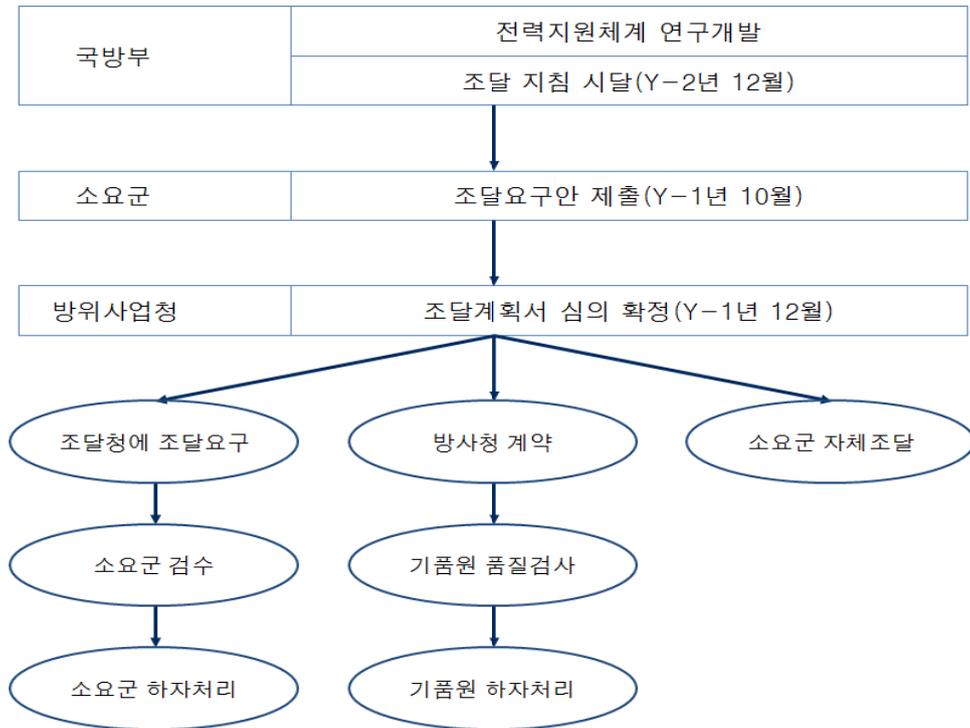
9)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조달계획 및 방법)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과하는 계약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고 있다.

[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

[표 2] 조달기관별 임무

구분	업무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li> <li>전·평시 조달정책 및 지침 시달</li> </ul>
각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 소요제기 및 조달요구</li> <li>부대조달</li> <li>납품검수 및 하자처리</li> </ul>
방위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평시 조달계획 심의, 확정</li> <li>규격, 목록, 조달원, 가격정보 획득 및 관리</li> <li>방위사업청 조달품목의 소요군 예산 위탁집행</li> </ul>
국방기술품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술지원</li> <li>방위사업청 조달품목 품질검사, 하자처리</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 조달계획품목 조달</li> </ul>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

### 3. 재정투입 규모

전력지원체계 조달 관련 예산은 예산항목상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분야 중 “급식 및 피복(급식비, 피복비)”, “군수지원 및 협력(장비획득, 물자획득, 장비유지, 연료확보, 수송활동, 재난 및 안전 관리, 교육용탄약, 탄약관리)”,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병영기본시설, 간부주거시설, 일반시설건설, 시설유지관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전력지원체계 총 예산은 2015년도 8조 1,333억원이며, 7조 4,265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7조 9,354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8조 1,680억원이다.

전력지원체계 중 군수품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6조 5,289억원이며, 5조 9,103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6조 4,652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6조 6,273억원이다. 군수품 중 급식 및 피복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1조 9,854억원이며, 1조 9,725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2조 658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2조 866억원이다.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은 2015년도 4조 5,435억원이며, 3조 9,378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4조 3,994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4조 5,407억원이다.

국방시설 조달 예산은 2015년도 1조 6,044억원이며, 1조 5,162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1조 4,702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1조 5,407억원이다. 병영기본시설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3,520억원이며, 3,366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2,322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2,363억원이다. 간부주거시설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1,464억원이며, 1,429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1,699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1,286억원이다. 일반시설개선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9,089억원이며, 8,528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8,886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9,720억원이다. 시설유지관리의 조달 예산은 2015년도 1,971억원이며, 1,839억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1,783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2,037억원이다.

[표 3] 전력지원체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15			2016	2017안
	예산액	현액	집행액		
총계	81,333	82,741	74,265	79,354	81,680
[군수품]	65,289	66,144	59,103	64,652	66,273
급식 및 피복	19,854	19,908	19,725	20,658	20,866
군수지원 및 협력	45,435	46,235	39,378	43,994	45,407
[국방시설]	16,044	16,597	15,162	14,702	15,407
병영기본시설	3,520	3,551	3,366	2,322	2,363
간부주거시설	1,464	1,681	1,429	1,699	1,286
일반시설개선	9,089	9,450	8,528	8,886	9,720
시설유지관리	1,971	1,916	1,839	1,783	2,03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 1. 군수품 조달계획 분석

##### 가. 조달계획 개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통합하여 검토·확정한다.<sup>12)</sup>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는 전력운영분야 군수품의 효율적·경제적 조달 및 적기 군수지원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적용범위, 방침, 일반지침 등을 포함한다.

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은 국방예산 전력운영분야의 모든 군수품 조달사업(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급식품목, 각급부대에 현금으로 배정·운용되는 사업(품목)(이하 “현금배정”이라 한다.), 국직기관·부대에서 일반수용비 또는 재료비로 직접 조달하는 품목 중 3천만원 미만인 품목은 본 조달계획서와는 별도로 조달 관리한다.

급식품목은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수협 중앙회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육군의 군지사(4곳)와 농·수협중앙회(지역군납조합)간의 계약을 통해 농·수·축산물을 부대조달하고 있다.<sup>13)</sup> 현금배정 품목은 차량유지비, 행정사무용품비, 영외자 급식비 등이며 조달의 경제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현지 부대가 직접 집행·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12)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4조(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①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확정한다.

13) 방위사업청은 장기저장성 품목(캔류, 장류 등)을 중앙조달하고 있다.

## 나. 조달기관 등 군수품 조달체계 부적정

조달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즉 조달기관은 방위사업청(중앙조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부대조달), 조달청(조달청조달)이다. 조달계획에서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조달기관을 어느 기관으로 하는가는 성공적인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sup>14)</sup>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외국산물품의 경우 미화 20만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는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달사무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이다. 즉 발주자와 납품자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보다는 조달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범위에서 군수품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sup>15)</sup>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은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조달청과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는 군수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도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계획 작성에 있어서 조달기관의 결정은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14)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15)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 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4] 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

기관별	장 점	단 점
방위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군수품 구매 경험</li> <li>· 군수품 구매 시 군의 특수 성능, 특이사항 반영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경쟁 미흡으로 인한 고가 구매 우려</li> <li>· 민간기술을 접목한 군수품 규격 향상 및 품질 강화에 어려움</li> <li>· 업체가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독점적 시장에 안주</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 경험 *군수품중 상용물자 구매경험도 보유</li> <li>· 투명/공정한 조달시스템 보유</li> <li>· 민간기술을 접목한 군수품 규격 향상 및 품질 강화에 유리</li> <li>· 시장 확대 및 입찰경쟁을 통해 국방 예산 절감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물자를 제외한 군수품 구매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li> <li>· 군수품 구매 시 군의 특수 성능, 특이사항 반영에 애로</li> </ul>

자료: 조달청 제출

2016년 현재 조달기관별로 조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와 더불어 피복, 급식, 유류 등을 조달하고 있고, 각군 등 부대조달은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 및 3,000만원 미만의 소액 품목을 중심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5,000만원 이상 상용품, 단가계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조달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29조제2항<sup>16)</sup>에 따른 예외사유를 두어 조달하고 있다. 특히 부대조달 품목 중 추정

16)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조달방법 등)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가격 5,000만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하고 있다.

[표 5] 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

조달기관		조달품목 유형
방위사업청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무기부품, 교육용 탄약, 군용트럭 등) 물자(일반보급품, 피복 등), 급식유류 등
부대 조달	각군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야채, 어류 등/농수협 지역조합 계약) 3,000만원 미만의 소액 품목(용역 포함) 3,000만원 이상의 부대조달실적이 있는 예외 품목 등
	국군재정관리단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품목
조달청		5,000만원 이상 상용품, 단가계약품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 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 2016. (일부보완)

이들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기관별로 연도별 조달실적을 보면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조달주체, 즉 방위사업청이 조달한 중앙조달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도는 비율이 88.2%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체 4조 6,870억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 3조 4,145억원으로서 15.3%p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조달청 요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 내외 수준이었는데 2013년부터 두 배 수준인 16%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13년 이후 조달청조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주로 급식류, 피복류, 의무물자(백신 등) 등 일반상용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의 조달청 위탁구매가 확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조달기관별 장·단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전시·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30,792	31,437	34,878	36,546	37,712	40,572	41,031	44,484	44,611	46,870
중앙조달	27,145 (88.2)	27,047 (86.0)	29,902 (85.7)	31,718 (86.8)	32,954 (87.4)	35,683 (87.9)	34,758 (84.7)	34,954 (78.6)	33,833 (75.8)	34,145 (72.9)
- 내자	21,502	20,021	20,889	21,573	21,925	26,833	25,555	25,679	23,108	24,067
- 외자	5,643	7,026	9,013	10,145	11,029	8,850	9,203	9,275	10,725	10,078
* 상업	2,578	3,198	4,004	5,026	4,825	4,750	5,896	6,052	6,728	5,852
* FMS	3,065	3,828	5,009	5,119	6,204	4,100	3,307	3,223	3,997	4,226
부대조달	1,648 (5.4)	2,313 (7.4)	2,324 (6.7)	2,240 (6.1)	1,801 (4.8)	1,983 (4.9)	2,656 (6.5)	2,116 (4.8)	2,547 (5.7)	4,799 (10.2)
조달청	1,999	2,076	2,652	2,588	2,957	2,906	3,617	7,414	8,231	7,926
조달	(6.5)	(6.6)	(7.6)	(7.1)	(7.8)	(7.2)	(8.8)	(16.7)	(18.5)	(16.9)

자료: e-나라지표

출처: 국방부(각군 및 기관 보고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요청이 확대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방위사업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인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용 물자를 중심으로 한 조달청 요청의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sup>17)</sup>

특히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급식유류 및 물자 등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으로 조달할 특별한 필요가 크지 않다.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급식유류 및 물자는 153개 품목(금액규모 7,807억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조달로 조달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2016년도 방위사업청 급식유류 조달계획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급식	유류	의무물자	공병물자	윤활유 등
품목수(계약건수)	153	115	6	8	6	18
조달금액	7,807	3,771	3,692	75	80	189

자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팀 간담회 자료」, 2016 방위사업청 조달기업 간담회, 2016

17) “조달의 안정성·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규격 상용화 전환 및 유류 등 조달청 위탁구매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작성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2005.1.19)」에서는 정부물자와 조달원(업체)이 동일한 품목(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부대조달은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에 10.2%로 증가하였다. 2015년 부대조달 비중의 증가는 소규모 중앙조달 미실적 품목 등이 부대조달로 전환되어 부대조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표 8] 부대 직접 조달 근거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조달방법 등)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전시 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

더불어 확대된 부대조달품목은 각군 예하 사단급까지 지정되어 있는 재무관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세부 내역 집계가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개발 시제품, 군 정비부대의 부품생산에 필요한 물자수요 등이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그 외 현지에서 필요한 즉시성, 효율성 등이 요구되는 품목의 조달은 부대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국방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부대조달을 축소하고, 조달청 요청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실적을 집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다. 전투긴요 수리부속 등 조달 부진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국방전시 군수지원소요 및 능력 판단 훈령」에 따라 외부의 수리부속 공급이 없어도 개전초기 일정기간(60일) 동안 전투장비의 가동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축해야 하는 수리부속이다. 수리부속 조달업무는 장비가동을 향상 및 전투준비태세 제고를 위한 핵심기능이다.<sup>18)</sup>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조달 부진은 전시 등 유사시에 장비가 있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2015년 기준 전투긴요 수리부속 전체 확보 비율은 수량기준으로는 42.1%(품목 기준 83.3%, 금액기준 23.9%)이다. 각 군별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육군의 목표 물량은 품목 620종에 수량은 409,235점으로 9,135억 원 규모이며, 확보 물량은 품목 431종에 수량은 149,813점으로 1,599억 원 규모이다. 육군의 목표 대비 확보 비율은 수량기준으로 36.6%(품목기준 69.5%, 금액기준 17.5%)이다. 2015년 기준 해군의 목표 물량은 품목 1,067종에 수량은 4,244점으로 287억 원 규모이며, 확보 물량은 품목 818종에 수량은 3,952점으로 210억 원 규모이다. 해군의 목표 대비 확보 비율은 수량기준으로 93.1%(품목기준 76.7%, 금액기준 73.2%)이다. 2015년 기준 공군의 목표 물량은 품목 1,019종에 수량은 35,417점으로 657억 원 규모이며, 확보 물량은 품목 1,004종에 수량은 35,212점으로 595억 원 규모이다. 해군의 목표 대비 확보 비율은 수량기준으로 99.4%(품목기준 98.5%, 금액기준 90.6%)이다.

특히 육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이 다른 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2015년에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비축 대상장비를 조정하였다(89종에서 77종으로 조정).<sup>19)20)</sup> 이에 따라 육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2015년 목표 대비 확보 비율은 2014년 대비 품목은 11.4% 감소하였으며, 수량은 14.8%, 금액은 1.2%만큼 증가하였다. 하지만 목표 대비 확보 비율은 아직 수량기준으로는 36.6%, 금액기준으로는 1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18) 우제웅·장기덕, “수리부속 조달 효율화를 위한 발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87호, 2013, 1쪽.

19) 구체적으로 기존 89종 장비 중 23종을 제외하고 11종을 추가하였다. 추가장비는 K-2 전차, K-56 탄약운반차, KHU 헬기 등 합참의 관심 장비이다. 제외장비는 130mm 다련장, 미스트랄, 토우 등 도태(예정) 장비이다.

20) 국방부는 육군의 비축목표량이 타군 대비 많은 이유는 비축대상장비가 타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군별 주요 비축대상장비는 육군 8천여대, 해군 1백여대, 공군 7백여대로 육군이 해군 대비 80배, 공군 대비 10배 많은 수준이다.

[표 9]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단위: 종, 점, 억원, %)

구분	2014			2015			
	목표	확보	비율	목표	확보	비율	
육군	품목	789	638	(80.9)	620	431	(69.5)
	수량	853,019	185,958	(21.8)	409,235	149,813	(36.6)
	금액	11,940	1,946	(16.3)	9,135	1,599	(17.5)
해군	품목	1,067	708	(66.4)	1,067	818	(76.7)
	수량	4,198	3,149	(75.0)	4,244	3,952	(93.1)
	금액	281	171	(60.9)	287	210	(73.2)
공군	품목	1,019	1,006	(98.7)	1,019	1,004	(98.5)
	수량	35,417	35,063	(99.0)	35,417	35,212	(99.4)
	금액	657	594	(90.4)	657	595	(90.6)
계	품목	2,875	2,352	(81.8)	2,706	2,253	(83.3)
	수량	892,634	224,170	(25.1)	448,896	188,977	(42.1)
	금액	12,878	2,711	(21.1)	10,079	2,404	(23.9)

주: 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당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를 산정하는 한편 목표로 설정한 재고는 다른 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2조제2항2)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6조제3항2)은 군수품 조달의 원칙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상태의 국가는 전투긴요품목 선정과 소요결정(목표량 결정)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각군 특히 육군은 확보목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하는 한

- 2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2조(수리부속) ①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정비부대·야전보급부대·정비창·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후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 2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6조(조달원칙) ③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편 수립된 목표에 따른 수리부속은 다른 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군수품 계약관리 분석

### 가. 계약관리 개요

조달계획으로 조달품목과 조달기관 등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실제 조달을 위한 계약절차가 이루어진다. 계약절차는 통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낙찰자 선정,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검사 및 납품, 대가지급 등으로 이루어진다.<sup>23)</sup> 이 가운데 업체 선정과 관련된 계약방법은 계약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sup>24)</sup>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일반경쟁계약은 응찰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제한경쟁계약은 기술능력, 공급실적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공급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경쟁하는 입찰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에서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2단계경쟁입찰과

23) 장기덕, 「군수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도 있다.

[표 10] 「국가계약법」 등의 계약방법

계약방법(근거)	내용
일반경쟁계약 (법제7조)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
제한경쟁계약 (법제7조, 영제21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 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는 방식
지명경쟁계약 (법제7조, 영제24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공급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경쟁하는 입찰 방식
수의계약 (법제7조, 영 제26, 27, 28, 29조)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2단계경쟁입찰 (영 제18조)	사전에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

#### 나. 수의계약 비중 과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불균형

방위사업청 계약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체 5,395건 중 수의계약이 3,428건(6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한경쟁계약 1,147건 (21.3%), 일반경쟁계약 806건(14.9%), 협상에의한계약 7건(0.1%), 2단계경쟁입찰 1건 (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계약건수는 2013년 1,223건에서 2015년 1,098건으로 125건 감소하였지만, 계약금액은 1조 9,204억원에서 2조 2,241억원으로 3,037억원 증가하였다.

[표 11] 방위사업청 계약방법별 실적(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년도	단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2단계경쟁 <sup>5)</sup>	협상 <sup>26)</sup>	계
2013	계약 건수	1,223 (66.3)	321 (17.4)	297 (16.1)	2 (0.1)	1 (0.1)	2 (0.1)	1,846 (100)
	계약 금액	19,204 (68.0)	5,798 (20.5)	2,742 (9.7)	17 (0.1)	4 (0.0)	460 (1.6)	28,225 (100)
2014	계약 건수	1,107 (62.8)	226 (12.8)	426 (24.1)	2 (0.1)	0 (0.0)	3 (0.2)	1,764 (100)
	계약 금액	21,447 (70.1)	5,361 (17.5)	3,128 (10.2)	199 (0.7)	0 (0.0)	469 (1.5)	30,604 (100)
2015	계약 건수	1,098 (61.5)	259 (14.5)	424 (23.8)	2 (0.1)	0 (0.0)	2 (0.1)	1,785 (100)
	계약 금액	22,241 (75.9)	4,117 (14.1)	2,564 (8.8)	373 (1.3)	0 (0.0)	6 (0.0)	29,301 (100)
계	계약 건수	3,428 (63.5)	806 (14.9)	1,147 (21.3)	6 (0.1)	1 (0.0)	7 (0.1)	5,395 (100)
	계약 금액	62,892 (71.4)	15,277 (17.3)	8,433 (9.6)	589 (0.7)	4 (0.0)	935 (1.1)	88,130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일반적으로 조달에 있어서는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계약 특히 특정 당사자와의 협상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5년도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비율 75.9%(금액기준)는 같은 2015년도 기준 조달청의 수의계약 비율 내자구매(금액기준) 전체 대비 22.9% 그리고 특히 물품구매 12.7%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 2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 12] 조달청의 계약방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내자전체	224,618 (100)	225,396 (100)	240,168 (100)	
	물품구매		157,957 (100)	167,669 (100)	
경쟁 계약	일반경쟁	70,573 (31.4)	70,727 (31.4)	78,168 (32.5)	
			물품구매	53,051 (33.6)	56,275 (33.6)
	지명경쟁	414 (0.2)	448 (0.2)	693 (0.3)	
			물품구매	436 (0.3)	693 (0.4)
	제한경쟁	102,469 (45.6)	101,071 (44.8)	106,424 (44.3)	
			물품구매	86,109 (54.5)	89,432 (53.3)
	소 계	173,456 (77.2)	172,246 (76.4)	185,285 (77.1)	
			물품구매	139,596 (88.4)	146,400 (87.3)
	수의계약	내자전체	51,162 (22.8)	53,150 (23.6)	54,883 (22.9)
		물품구매		18,361 (11.6)	21,269 (12.7)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군수품의 특성<sup>27)</sup>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군수품 유형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액을 기준으로 항공기 99.1%, 유도무기 93.9%, 함정 83.2% 등 무기체계와 직접 연결된 유형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장비 93.5%, 급식유류 38.2%, 물자 56.5% 등 일반적인 물품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7) 군수품은 전쟁용 특수물자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만들어진 제품의 구매보다는 특정 목적에 맞춰 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능을 사전에 확정하는 특징을 지닌다(최기출, 「획득 군수관리론」, 21세기군사연구소, 2009).

[표 13] 방위사업청 품목유형별 계약방법(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2단계경쟁	협상	계
일반 장비	계약 건수	412 (75.3)	81 (14.8)	54 (9.9)	0 (0.0)	0 (0.0)	0 (0.0)	547 (100)
	계약 금액	6,675 (93.5)	356 (5.0)	105 (1.5)	0 (0.0)	0 (0.0)	0 (0.0)	7,136 (100)
통신 장비	계약 건수	261 (73.9)	69 (19.5)	23 (6.5)	0 (0.0)	0 (0.0)	0 (0.0)	353 (100)
	계약 금액	1,229 (62.3)	679 (34.4)	65 (3.3)	0 (0.0)	0 (0.0)	0 (0.0)	1,973 (100)
급식 유류	계약 건수	260 (25.4)	173 (16.9)	586 (57.2)	1 (0.1)	0 (0.0)	4 (0.4)	1,024 (100)
	계약 금액	9,445 (38.2)	10,347 (41.8)	4,936 (19.9)	11 (0.0)	0 (0.0)	10 (0.0)	24,749 (100)
물자	계약 건수	341 (43.1)	150 (19.0)	297 (37.5)	0 (0.0)	1 (0.1)	2 (0.3)	791 (100)
	계약 금액	6,966 (56.5)	1,562 (12.7)	2,923 (23.7)	0 (0.0)	4 (0.0)	873 (7.1)	12,328 (100)
기동 화력	계약 건수	703 (71.4)	185 (18.8)	94 (9.6)	2 (0.2)	0 (0.0)	0 (0.0)	984 (100)
	계약 금액	11,947 (90.3)	1,121 (8.5)	150 (1.1)	12 (0.1)	0 (0.0)	0 (0.0)	13,230 (100)
지휘 정찰	계약 건수	206 (80.5)	38 (14.8)	10 (3.9)	1 (0.4)	0 (0.0)	1 (0.4)	256 (100)
	계약 금액	1,354 (82.0)	231 (14.0)	8 (0.5)	6 (0.4)	0 (0.0)	52 (3.1)	1,651 (100)
함정	계약 건수	296 (85.5)	19 (5.5)	29 (8.4)	2 (0.6)	0 (0.0)	0 (0.0)	346 (100)
	계약 금액	3,827 (83.2)	73 (1.6)	142 (3.1)	560 (12.2)	0 (0.0)	0 (0.0)	4,602 (100)
항공기	계약 건수	253 (91.0)	11 (4.0)	14 (5.0)	0 (0.0)	0 (0.0)	0 (0.0)	278 (100)
	계약 금액	6,975 (99.1)	55 (0.8)	9 (0.1)	0 (0.0)	0 (0.0)	0 (0.0)	7,039 (100)
유도 무기	계약 건수	696 (85.3)	80 (9.8)	40 (4.9)	0 (0.0)	0 (0.0)	0 (0.0)	816 (100)
	계약 금액	14,474 (93.9)	853 (5.5)	95 (0.6)	0 (0.0)	0 (0.0)	0 (0.0)	15,422 (100)
계	계약 건수	3,428 (63.5)	806 (14.9)	1,147 (21.3)	6 (0.1)	1 (0.0)	7 (0.1)	5,395 (100)
	계약 금액	62,892 (71.4)	15,277 (17.3)	8,433 (9.6)	589 (0.7)	4 (0.0)	935 (1.1)	88,130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수의계약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천재지변, 국가기밀, 군용물자 등)는 524건(2,894억원), 제26조제1항제2호(특허, 단일업체 등)는 8건(23억원), 제26조제1항제3호(산업기술촉진법 등)는 3건(36억원), 제26조제1항제4호(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단체 등)는 251건(5,027억원), 제26조제1항제5호(소액, 방산물자 등)는 1,436건(2조 4,354억원), 제27조제1항제1호(공고 후 수의)는 46건(711억원), 제27조제1항제2호(재공고 후 수의)는 850건(1조 1,893억원), 부칙제7조(경과조치)<sup>28)</sup>는 58건(2,103억원)이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방산업체)는 251건(1조 5,611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지원은 5,027억원으로서 물자와 급식유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별 계약액 합계 6조 2,652억원 대비 8.0%이며, 품목유형별로는 물자 4,037억원(58.0%), 급식유류 951억원(10.1%) 등이다.

28)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표 14] 방위사업청의 품목유형별 및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방위 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방산업체)	계
	제26조 제1항 제1호 (천재지변, 국가기밀, 군용물자 등)	제26조 제1항 제2호 (특허, 단일업체 등)	제26조 제1항 제3호 (산업기술 촉진법 등)	제26조 제1항 제4호 (국유공자 , 장애인, 보훈단체 등)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액, 방산물자 등)	제27조 제1항 제1호 (공고후 수의)	제27조 제1항 제2호 (재공고 후 수의)	부칙 제7조 (경과조치) (사비출공장 특별법인)			
일반 장비	계약 건수	57 (13.8)	1 (0.2)	3 (0.7)	0 (0.0)	161 (39.1)	5 (1.2)	185 (44.9)	0 (0.0)	0 (0.0)	412 (100)
	계약 금액	69 (1.0)	1 (0.0)	36 (0.5)	0 (0.0)	4,627 (69.3)	16 (0.2)	1,926 (28.9)	0 (0.0)	0 (0.0)	6,675 (100)
통신 장비	계약 건수	72 (27.6)	0 (0.0)	0 (0.0)	3 (1.1)	132 (50.6)	1 (0.4)	43 (16.5)	0 (0.0)	10 (3.8)	261 (100)
	계약 금액	256 (20.8)	0 (0.0)	0 (0.0)	39 (3.2)	417 (33.9)	2 (0.2)	492 (40.0)	0 (0.0)	23 (1.9)	1,229 (100)
급식 유류	계약 건수	12 (4.6)	0 (0.0)	0 (0.0)	51 (19.6)	27 (10.4)	11 (4.2)	121 (46.5)	38 (14.6)	0 (0.0)	260 (100)
	계약 금액	65 (0.7)	0 (0.0)	0 (0.0)	951 (10.1)	1,106 (11.7)	523 (5.5)	5,040 (53.4)	1,760 (18.6)	0 (0.0)	9,445 (100)
물자	계약 건수	33 (9.7)	1 (0.3)	0 (0.0)	197 (57.8)	25 (7.3)	6 (1.8)	62 (18.2)	17 (5.0)	0 (0.0)	341 (100)
	계약 금액	1,306 (18.7)	2 (0.0)	0 (0.0)	4,037 (58.0)	6 (0.1)	11 (0.2)	1,303 (18.7)	301 (4.3)	0 (0.0)	6,966 (100)
기동 화력	계약 건수	132 (18.8)	0 (0.0)	0 (0.0)	0 (0.0)	285 (40.5)	3 (0.4)	216 (30.7)	0 (0.0)	67 (9.5)	703 (100)
	계약 금액	240 (2.0)	0 (0.0)	0 (0.0)	0 (0.0)	3,618 (30.3)	11 (0.1)	1,589 (13.3)	0 (0.0)	6,489 (54.3)	11,947 (100)
지휘 경찰	계약 건수	29 (14.1)	1 (0.5)	0 (0.0)	0 (0.0)	109 (53.2)	3 (1.5)	37 (18.0)	0 (0.0)	26 (12.7)	205 (100)
	계약 금액	88 (7.9)	1 (0.1)	0 (0.0)	0 (0.0)	539 (48.4)	6 (0.5)	164 (14.7)	0 (0.0)	316 (28.4)	1,114 (100)
함정	계약 건수	60 (20.3)	1 (0.3)	0 (0.0)	0 (0.0)	185 (62.5)	2 (0.7)	45 (15.2)	0 (0.0)	3 (1.0)	296 (100)
	계약 금액	162 (4.2)	1 (0.0)	0 (0.0)	0 (0.0)	2,486 (65.0)	10 (0.3)	612 (16.0)	0 (0.0)	556 (14.5)	3,827 (100)
항공기	계약 건수	61 (24.1)	2 (0.8)	0 (0.0)	0 (0.0)	80 (31.6)	0 (0.0)	29 (11.5)	0 (0.0)	81 (32.0)	253 (100)
	계약 금액	170 (2.4)	15 (0.2)	0 (0.0)	0 (0.0)	2,432 (34.9)	0 (0.0)	87 (1.2)	0 (0.0)	4,270 (61.2)	6,974 (100)
유도 무기	계약 건수	68 (9.8)	2 (0.3)	0 (0.0)	0 (0.0)	432 (62.1)	15 (2.2)	112 (16.1)	3 (0.4)	64 (9.2)	696 (100)
	계약 금액	537 (3.7)	2 (0.0)	0 (0.0)	0 (0.0)	9,125 (63.0)	131 (0.9)	681 (4.7)	42 (0.3)	3,955 (27.3)	14,473 (100)
계	계약 건수	524 (15.3)	8 (0.2)	3 (0.1)	251 (7.3)	1,436 (41.9)	46 (1.3)	850 (24.8)	58 (1.7)	251 (7.3)	3,427 (100)
	계약 금액	2,894 (4.6)	23 (0.0)	36 (0.1)	5,027 (8.0)	24,354 (38.9)	711 (1.1)	11,893 (19.0)	2,103 (3.4)	15,611 (24.9)	62,652 (100)

주: 지휘경찰계약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건 미포함.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한편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 계약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지방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등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의 국가유공자 지원 등 지원제도는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대략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금액과 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조달청의 최근 3년간 내자(內資)기준 수의계약액은 총 15조 9,195억원으로서 전체 구매물자 69조 182억원 대비 23.1%이다([표 13] 참조).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6,103억원으로 전체 수의계약액 대비 3.8%를 차지한다.<sup>29)</sup> 방위사업청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은 8.0%로, 조달청 대비 4.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수의계약 비교(2013~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조달청	방위사업청
전체 수의계약금액(A)	159,195	62,652
보훈·복지단체(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수의계약금액(B)	6,103	5,027
비율(B/A)	(3.8)	(8.0)

주: 보훈·복지단체는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임.

자료: 조달청 내부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한편 방위사업청의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전체 수의계약 가운데 가목 자활 용사촌(2016년 9월 현재 582가구, 가족수 1,172명, 18개)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로서 월남 참전 용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지원 전체 수의계약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간 혹은 장애인 간 그리고 유

29)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지원방식은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지원’과 ‘정부조달 참여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상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근거로 단체별로 일정 물량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사기관 간에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세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자활용사촌 등을 위한 수의계약은 단체들의 생산설비·능력 등을 고려한 물량배정을 통해 단체 간 형평성 유지 및 경쟁계약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6] 국가유공자·장애인·보훈단체 수의계약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sup>30)</sup>				
		가목(자활용사촌)	나목(상이단체)	다목(중증장애인)	라목(사회복지법인)	합계
급식	계약건수	11	34	0	6	51
	계약금액	485	403	0	63	951
물자	계약건수	83	19	59	36	197
	계약금액	2,861	304	484	388	4,037
통신	계약건수	0	3	0	0	3
	계약금액	0	39	0	0	39
장비	계약건수	94	56	59	42	251
	계약금액	3,346(66.6)	746(14.8)	484(9.6)	451(9.0)	5,027(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큰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sup>31)</sup>에 따른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인밖에 응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와 직접 연결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불가피한 수의계약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품목을 계속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등의 현상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별도로 분석한다.

#### 다. 동일업체 반복계약 과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의 계약실적을 보면 계약건수는 모두 5,395건이고 계약업체수는 771개로서, 업체당 평균 7.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동일한 업체와 1회만 계약한 건수는 214건(4.0%)이며, 나머지 계약(96.0%)들은 모두 동일한 업체와 2회 이상 계약하였다. 회수를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업체와 2회~5회 계약한 건수는 1,002건(18.6%), 6회~10회는 831건(15.4%), 11회~50회는 2,162건(40.1%), 51회~100회는 666건(12.3%), 100회 이상은 520건(9.6%)이다.

[표 17]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계약회수	(단위: 개, 건, %)						계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약업체수	214 (27.8)	326 (42.3)	113 (14.7)	104 (13.5)	10 (1.3)	4 (0.5)	771 (100)
계약건수	214 (4.0)	1,002 (18.6)	831 (15.4)	2,162 (40.1)	666 (12.3)	520 (9.6)	5,395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동일업체와의 평균 계약회수를 계약방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경쟁계약은 평균 2.6건, 수의계약은 평균 6.7건, 제한경쟁계약은 평균 4.0건이며, 지명경쟁계약은 평균 1.2건, 2단계경쟁계약은 평균 1.0건, 협상에의한계약은 평균 1.2건으로 나타났다.

일반경쟁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의 계약은 다른 계약방법에 비해서는 업체당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건수가 작지만, 1회 계약은 164건(20.3%), 2회~5회는 335건(41.6%), 6회~10회는 131건(16.3%), 11회~50회는 176건(21.8%)이다.

[표 18] 일반경쟁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단위: 개, 건, %)

계약회수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
계약업체수	164 (52.7)	120 (38.6)	18 (5.8)	9 (2.9)	0 (0.0)	0 (0.0)	311 (100)
계약건수	164 (20.3)	335 (41.6)	131 (16.3)	176 (21.8)	0 (0.0)	0 (0.0)	806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 가운데 특히 동일업체가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로서 건당 10억원 이상인 계약을 보면 주로 제조 품목으로 참기름, 방탄헬멧, K-1 전차 여과기류, 변환기조립체, 전술훈련용수류탄 등이다.

[표 19] 일반경쟁 동일업체 반복계약(건당 10억원 이상) 현황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1	2013	참기름	37	(주)○○○	급식유류
	2014	참기름	30		급식유류
	2015	참기름	28		급식유류
2	2013	치즈	17	○○○○(주)	급식유류
	2015	치즈	23		급식유류
3	2013	포도주스	29	○○○○○○(주)	급식유류
	2014	포도주스	19		급식유류
	2015	포도주스	21		급식유류
4	2013	오렌지주스	30	○○○○○○○○(주)	급식유류
	2015	오렌지주스	13		급식유류
5	2013	JP-8(화차A)	1,161	○○○○○(주)	급식유류
	2015	JP-8(화차A)	845		급식유류
6	2013	윤활유, 엔진용	43	○○○○○○○○○○(주)	급식유류
	2014	엔진용 윤활유	40		급식유류
	2015	엔진용 윤활유	51		급식유류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7	2013	구형방탄헬멧	28	(주)○○○○	물자
	2014	구형방탄헬멧	25		물자
	2015	신형 방탄헬멧	48		물자
8	2014	공병우의	15	○○○○○○(주)	물자
	2015	공병우의	10		물자
9	2013	판초우의	26	○○○○(주)	물자
	2014	판초우의	30		물자
10	2013	신형 방탄헬멧	30	(주)○○○○	물자
	2014	신형 방탄헬멧	43		물자
11	2013	K-1 전차 여과기류	12	○○○○○○○○(주)	기동화력
	2014	필터류(K-1 전차)	14		기동화력
	2015	K-1 전차 여과기류	10		기동화력
12	2014	변환기조립체 부품(수중음파탐지기용)	11	(주)○○○○	지휘정찰
	2015	변환기조립체, 수중음파탐지기용	24		지휘정찰
13	2013	전술훈련용수류탄	121	○○○○○○○○(주)	유도무기
	2014	14년 전술훈련용수류탄	71		유도무기
	2015	15년 전술훈련용수류탄	94		유도무기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일반경쟁계약의 경우 동일품목을 동일업체가 반복하여 계약하게 되는 것은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하여 계속 우위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의 1회 계약은 164건(4.8%), 2회~5회는 651건(19.0%), 6회~10회는 393건(11.5%), 11회~50회는 1,419건(41.4%), 51회~100회는 503건(14.7%), 100회 이상은 298건(8.7%)이다.

[표 20] 수의계약 계약업체당 계약회수 현황(2013~2015년)

(단위: 개, 건, %)

계약회수	1회	2-5회	6-10회	11-50회	51-100회	100회이상	계
계약업체수	164 (32.1)	218 (42.7)	53 (10.4)	67 (13.1)	7 (1.4)	2 (0.4)	511 (100)
계약건수	164 (4.8)	651 (19.0)	393 (11.5)	1,419 (41.4)	503 (14.7)	298 (8.7)	3,428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일업체가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법정사유 등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나 반드시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서 동일품목을 동일업체가 계약한 경우는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동화력계약팀의 일반광학장비, 고압호스, 지휘정찰계약팀의 탐지기, 풍향 및 풍속용 정비 등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업체와 계속 계약하면서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표 21]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건당 10억원 이상) 현황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1	2013	¼톤 신형지프 및 1¼톤 성능개량 공기압식 타이어	22	○○○○○(주)	일반장비
	2015	1¼톤 성능개량 차량(K311 A1)용 공기압식 타이어	16		일반장비
2	2013	M.A.N 엔진 유지부품류	15	○○○○○○○○(주)	일반장비
	2014	M.A.N 엔진 유지부품류	35		일반장비
3	2013	군용 트레라	11	○○○○○	일반장비
	2014	군용 트레라	12		일반장비
	2015	군용 트레라	12		일반장비
4	2013	군용 표준차량 타이어류	80	(주)○○	일반장비
	2014	군용 표준차량 타이어류	72		일반장비
	2015	군용 표준차량 타이어류	40		일반장비
5	2013	민수용 짚(개조형)	72	○○○○○(주)	일반장비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2014	민수용 짚	147		일반장비
	2015	민수용 짚	207		일반장비
6	2013	윈드실드류	12	○○○○○	일반장비
	2014	윈드실드류	22		일반장비
7	2013	차량 쿠션시트류	13	(주)○○	일반장비
	2014	차량 쿠션시트류	14		일반장비
8	2013	축전식 전지(밀폐형)	14	○○○○○○(협)	일반장비
	2014	축전지 전지(밀폐형)	18		일반장비
	2015	축전식 전지(밀폐형)	24		일반장비
9	2014	축전지 전지(6TN)(건식)	50	○○○○○○(협)	일반장비
	2015	축전지 전지(6TN)(건식)	33		일반장비
10	2013	표준차 유지부품	57	○○○○○(주)	일반장비
	2014	표준차 유지부품	98		일반장비
	2015	표준차 유지부품	101		일반장비
11	2013	표준차 유지부품	30	○○○○○○○(주)	일반장비
	2014	표준차 유지부품	50		일반장비
	2015	표준차 유지부품	38		일반장비
12	2013	휠다 및 판류	20	(주)○○	일반장비
	2014	휠다 및 판류	19		일반장비
13	2013	휠타류(차량용)	19	(주)○○○○	일반장비
	2015	휠타류(중장비)	11		일반장비
14	2014	GRC-512K부품(제조)	14	(주)○○○○○○○○○○	통신장비
	2015	GRC-512K부품(제조)	14		통신장비
15	2013	리튬전지류	29	(주)○○○○	통신장비
	2014	리튬전지류(BA-6086K 등 2종)	11		통신장비
	2014	리튬전지류(BA-6086K 등 3종)	76		통신장비
	2015	리튬전지류(BA-6086K 등 3종)	43		통신장비
	2015	리튬전지류(BA-6821AK 등 7종)	20		통신장비
16	2013	리튬전지류(BA-6853AK)	71	○○○○○(주)	통신장비
	2013	JP-8(송유관)	1,048		급식유류
	2014	JP-8(송유관)	982		급식유류
17	2015	JP-8(송유관)	723	○○○○(주)	급식유류
	2013	드럼, 수송 저장용	15		급식유류
	2014	드럼, 수송 저장용	17		급식유류
	2015	드럼, 수송 저장용	20		급식유류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18	2013	바이오디젤(BD20)	12	○○○○○○(주)	급식유류
	2014	바이오디젤	10		급식유류
19	2013	생선가스	30	(주)○○	급식유류
	2014	생선가스	31		급식유류
20	2013	전투식량2형	50	○○○○(주)	급식유류
	2014	전투식량2형	49		급식유류
21	2013	낙하산수리부속품	80	(주)○○	물자
	2014	낙하산수리부속품	54		물자
	2015	낙하산 및 수리부속	119		물자
22	2013	수입지 및 수입포	13	(주)○○○○	물자
	2014	수입지 및 수입포	20		물자
	2015	수입지 및 수입포	24		물자
23	2014	K-1 전차 변속기부품류(구매)	14	○○○○○○(주)	기동화력
	2014	K-1 전차 변속기부품류(구매)	13		기동화력
	2015	K-1 전차 변속기부품류(구매)	14		기동화력
24	2013	K-1 전차 엔진부품류	29	○○○○○○○○(주)	기동화력
	2014	K-1 전차 엔진부품류(구매)	16		기동화력
	2015	K-1 전차 엔진부품류(구매)	21		기동화력
25	2013	K-1 전차 차체부품류	18	○○○○(주)	기동화력
	2014	K-1 전차 차체부품류(구매 추가)	25		기동화력
	2014	K-1 전차 차체부품류(구매)	12		기동화력
26	2013	K9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41	○○○○○○(주)	기동화력
	2014	K9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43		기동화력
	2014	K9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52		기동화력
	2014	K계열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11		기동화력
	2015	K계열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15		기동화력
	2015	K계열 자주포 유지용 일반부품류	16		기동화력
27	2014	K계열 전차 부품류(구매)	18	○○○○(주)	기동화력
	2015	K계열 전차 부품류(구매)	43		기동화력
	2015	K계열 전차 부품류(구매)	48		기동화력
28	2013	궤도장비 씨트류	14	(주)○○	기동화력
	2014	궤도장비 씨트류	11		기동화력
	2015	궤도장비 씨트류	15		기동화력
29	2013	장갑차 부품	32	○○○○○○(주)	기동화력
	2014	장갑차 부품	19		기동화력
	2014	장갑차 부품류(K-21)	23		기동화력
	2015	장갑차 부품류(K-200)(구매)	24		기동화력

(단위: 억원)

연번	계약년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담당부서
	2015	장갑차 부품류(K-21)(구매)	32		기동화력
	2015	장갑차 부품류(회로카드 및 부수기재)(구매)	37		기동화력
30	2013	전차 사격통제장치 부품류	12	○○○○○(주)	기동화력
	2014	전차 사격통제장치 부품류(구매)	17		기동화력
	2015	전차 사격통제장치 부품류(구매)	16		기동화력
31	2013	클러치 조립체	12	○○○○	기동화력
	2014	클러치 조립체류	10		기동화력
32	2014	비호 수리부속(구매)	13	○○○○○(주)	유도무기
	2015	비호 수리부속(구매)	25		유도무기
33	2013	수입솔류	14	○○○○○○○○○(주)	유도무기
	2014	수입솔류	10		유도무기
	2015	수입솔류	13		유도무기
34	2013	연습용지뢰/부품류	26	○○○○(주)	유도무기
	2014	연습용지뢰/부품류 14년	33		유도무기
35	2013	천마 비호 수리부속류(구매)	90	○○○○○(주)	유도무기
	2014	천마 수리부속류 14년	40		유도무기
	2015	천마 수리부속류	65		유도무기
36	2014	수산화리튬카트리지, 정화장치용	13	○○○○○○○(주)	함정
	2015	수산화리튬카트리지, 정화장치용	10		함정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은 공고·재공고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즉각대응이 제한된다는 연구결과<sup>32)</sup>도 있다.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대부분 일반경쟁을 위한 공고를 하였지만, 응찰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등으로서 불가피한 점은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특정품목을 조달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달원 확대를 위하여 경직된 국방규격을 점검하거나, 선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도입하는 등 경쟁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길병욱 외, 「효과적인 군수예산 집행을 위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 3. 군수품 납품 및 품질관리 분석

#### 가. 품질관리의 개요

품질관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는 조달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체등록, 입찰·계약, 납품,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업체등록 단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직접생산 확인은 제조물품 입찰참자자격 등록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등록된 제조업체의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이는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또는 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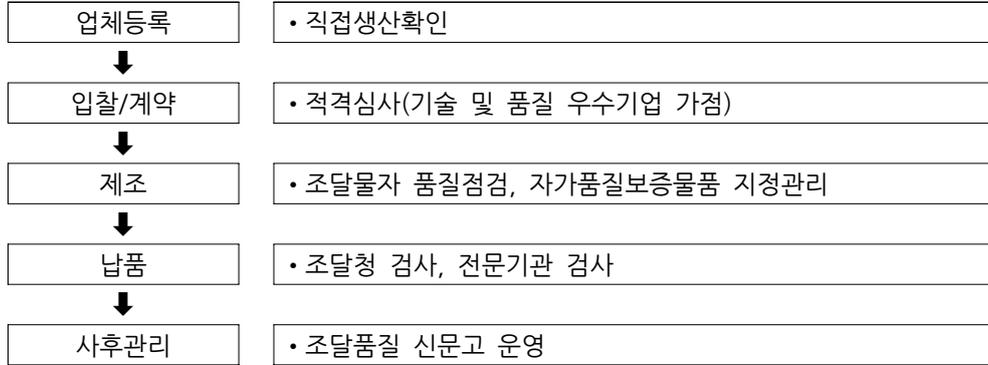
제조단계에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과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가 이루어진다. 조달물자 품질점검은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생산(납품)현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납품단계에서는 조달청 검사 혹은 전문기관 검사가 이루어진다. 조달청 직접검사는 조달물품 중 품질에 대한 우려가 큰 가구류 및 섬유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해 조달청 공무원이 제조현장 등을 방문 관능검사 후 시료를 채취하여, 조달청 자체 시험실을 이용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검사하는 제도이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조달품질 신문고를 운영한다. 조달청은 조달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량품신고, 사용자 불만 등을 접수 후 조치하고 기타 품질정보를 수집하여 조달물자 품질관리 체도에 반영하고 있다.

33) 장기덕, 「군수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242쪽.

[표 22] 조달청 업무단계별 품질관리 프로세스



자료: 조달품질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 조달품질원, 2016.

군수품의 품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용 특수물자는 품질보증활동에 전문기술이 요구된다. 품질보증이란 군수품 전 주기에 걸쳐 사용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단계에서 품질을 설계(설계품질)하고, 생산단계에서 품질을 형성(제조품질)하며, 배치 및 운영단계에서 품질을 유지(운영품질)하고 폐기 시에는 품질정보를 획득하여 신뢰감을 확보하는 계획되고 조직된 모든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sup>34)</sup>

군수품 품질보증은 조달방법에 따라 중앙조달은 국방기술품질원(일부품목은 소요군)이, 부대조달은 각군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sup>35)</sup>

방위사업청은 조달청과 다소 다른 품질보증이라는 품질관리 절차를 지니고 있다.<sup>36)</sup> 방위사업청의 품질보증절차는 품질보증활동 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수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 대군지원업무(사용자불만처리)가 있다.

34) 최기출, 「획득군수관리론」, 21세기군사연구소, 2015, 3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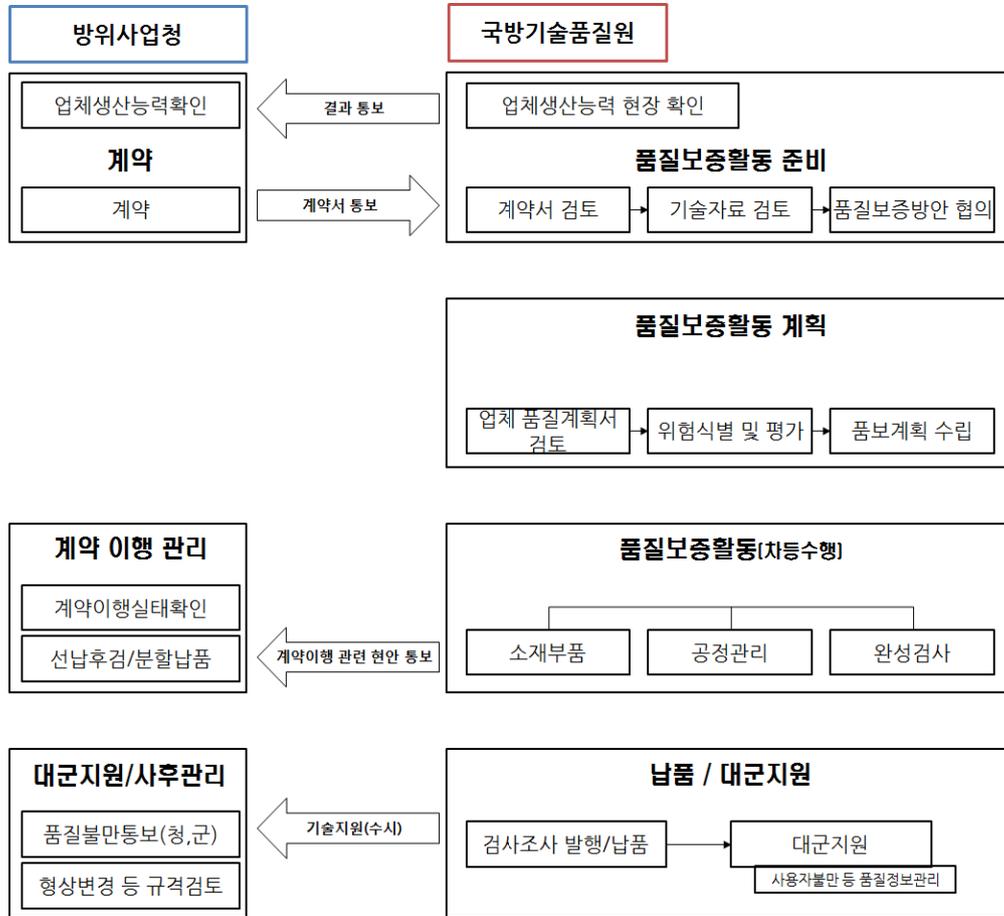
3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품질보증)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6)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의 차이

구분	품질관리	품질보증
목적	경제적 품질 생산(기업위주)	최고의 품질 생산(사용자 위주)
의무	기업의 관리개선 추구(기업 내적요소)	사용자의 품질신뢰 구축(기업 내외적요소)
도구	통계적 관리방식	전사적 관리방식
조건	경제적 투자	필요 투자

자료: 최기출, 「획득군수관리론」, 21세기군사연구소, 2016, 365쪽.

[그림 2]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016년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2016.

품질보증활동 준비 이전에 계약단계에서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이루어진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정비설비, 검사설비, 기술자격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sup>37)</sup>

37)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기품원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생산능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요구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준비단계에서는 계약서가 접수되면 계약문서의 특수조건 등의 검토, 기술자료의 충분성 검토 및 계약업체와 품질보증활동 준비를 위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협의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업체 품질계획서 검토 및 승인, 위험식별 및 평가, 정부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업체 품질계획서는 제품품질 요구 이행계획, 품질보증 시스템 요구 이행계획,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이 포함된다. 위험식별 및 평가는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 수행에 있어 위험과 관련된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다.

수행단계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 확인감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시스템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질보증활동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한다. 제품확인감사는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품질보증형태<sup>38)</sup>는 단순품질보증형(I형), 선택품질보증형(II형), 표준품질보증형(III형), 체계품질보증형(IV형)으로 분류된다. 단순품질보증형(I형)은 품질보증업무를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선택품질보증형(II형)은 업체가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심사를 거쳐 업체 자체적인 품질보증을 하도록 하는 품질보증제도이다. 표준품질보증형(III형)은 제품확인감사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프로세스 검증 및 품질경영 시스템을 평가한다. 체계품질보증형(IV형)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프로세스, 제품확인감사를 수행한다.

---

38) 품질보증 형태란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단계에서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조건으로 품목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품질보증형태는 구매자의 고유권한이며, 형태에 따라 업체 품질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구 수준 및 범위가 결정된다(국방기술품질원, 「신규 계약업체 지원을 위한 군수품 품질보증 워크북」, 국방기술품질원, 2015, 12쪽).

[표 23] 품질보증형태 분류

분류	내용
단순품질보증형 (I형)	공인된 우수품질인증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안정된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 나. 한국산업표준(KS) 등 법정임의인증 품목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
선택품질보증형 (II형)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표준품질보증형 (III형)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체계품질보증형 (IV형)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자료: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 나. 계약해제·해지 등 조달 실패

군수품은 만들어진 제품의 구매보다는 특정 목적에 맞춰 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쟁용 특수물자로 품질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특성이 있다.<sup>39)</sup> 따라서 군수품 조달에 있어서 업체의 생산 및 정비능력의 구비가 조달이행의 적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계약 해제·해지 현황은 총 132건이며 금액규모는 507억 원이다. 이 중 계약포기가 74건(364억원)으로 56.1%(금액기준 74.8%)를 차지하였으며, 능력부족 40건(93.1억원)으로 30.3%(금액기준 18.3%), 기타 계약해제·해지 20건(75.3억원)으로 13.6%(금액기준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포기는 업체가 낙찰된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계약 포기는 신규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며, 군수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낙찰을 받은 후 계약 이행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능력부족은 업체가 계약 후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조달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이다.

39) 최기철, 「획득군수관리론」, 21세기군사연구소, 2009, 364쪽.

[표 24] 방위사업청 계약 해제·해지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계
계약포기	계약 건수	32 (56.1)	20 (46.5)	22 (68.8)	74 (56.1)
	계약 금액	112 (74.2)	118 (59.3)	134 (85.9)	364 (74.8)
능력부족	계약 건수	18 (31.6)	17 (39.5)	5 (15.6)	40 (30.3)
	계약 금액	33 (21.9)	51 (25.6)	9 (5.8)	93 (18.3)
기타	계약 건수	7 (12.3)	6 (14.0)	5 (15.6)	18 (13.6)
	계약 금액	6 (4.0)	30 (15.1)	14 (9.0)	50 (9.9)
계	계약 건수	57 (100)	43 (100)	32 (100)	132 (100)
	계약 금액	151 (100)	199 (100)	156 (100)	507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현황은 부대조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육군 부대조달 계약 해제·해지 현황은 총 205건으로 금액규모는 145 억원이다. 이 중 능력부족이 186건(111.7억원)으로 90.7%(금액기준 77.4%)를 차지한다.

[표 25] 육군 계약 해제·해지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계
능력부족	계약 건수	78 (97.5)	72 (83.7)	36 (92.3)	186 (90.7)
	계약 금액	42 (99.1)	42 (83.8)	27.7 (53.4)	111.7 (77.4)
기타	계약 건수	2 (2.5)	14 (16.3)	3 (7.7)	19 (9.3)
	계약 금액	0.4 (0.9)	8.1 (16.2)	24.3 (46.8)	32.8 (22.7)
계	계약 건수	80 (100)	86 (100)	39 (100)	205 (100)
	계약 금액	42.4 (100)	50.1 (100)	51.9 (100)	144.4 (100)

자료: 육군 군수사령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일반적으로 계약포기는 신규업체에서 많이 발생한다. 신규업체의 경우, 군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정확하게 맞는 생산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시제품 생산을 요구할 때, 입찰을 통해 계약을 완료하고, 시제품 생산을 하려고 하다보면, 신규업체는 생산능력이 구비되지 않아 계약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 외에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입찰참가 단계에서부터 업체의 생산능력을 엄격하게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군수품의 적기 조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으며,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제·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이전에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생산 확인은 군수품 조달에서는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이며, 이는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자격유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또는 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군수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대상은 ①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②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③ 기타 무기체계계약부장·장비물자계약부장,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이다.<sup>40)</sup>

40)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 "업체 생산·정비능력"이라 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무기체계계약부장·장비물자계약부장(이하 "각 계약부장"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각 계약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확인 품명수는 총 145건이며, 이 중 44건(30.3%)이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57건, 2014년에는 44건, 2015년에는 44건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불일치 판정은 2013년에는 25건(43.8%), 2014년에는 11건(25.0%), 2015년에는 8건(18.1%)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최근 3년간 계약포기와 능력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는 2013년 50건, 2014년 37건, 2015년 27건으로 나타나([표 24] 참조),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따른 불일치 건수는 2.0배에서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업체 생산능력 확인 불일치율 추이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품명수 <sup>41)</sup>	57	44	44	145
불일치수	25	11	8	44
불일치율	(43.8)	(25.0)	(18.1)	(30.3)

자료: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수행한 직접생산 확인은 13,703건으로 2,828건(20.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5년 기준 조달청의 내자 구매건수는 33,567건으로 직접생산 확인 건수는 4.6% 수준이다.

[표 27] 조달청(조달품질원) 직접생산 확인 부적합률 추이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품명수	8,903	3,258	1,542	13,703
부적합수	1,898	606	324	2,828
부적합률	(21.3)	(18.6)	(21.0)	(20.6)

자료: 조달품질원 제출자료

41) 품명은 “전차수리부속”과 같은 계약건명과 유사하며, 품목명은 전차수리부속을 구성하는 “볼트”, “너트”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명은 계약건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건수는 2015년 계약건수 1,785건 대비 2.5% 수준으로 조달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군수품의 특성상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생산능력 면제 사유로 인하여 면제 대상 업체가 많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의 재낙찰률이 높으며,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사유가 된다.<sup>42)</sup>

하지만, 계약해제·해지 업체 중 기존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업체 A는 2013년 총 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에 대한 2014년 계약체결건에 있어서는 계약포기와 능력부족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였다. 따라서 신규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확인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8] 기존 납품업체 계약 해제·해지 사례

계약체결년도	계약건명	비고
2013	고정나사	
	등명구	
	밸브조립체, 포핏, 선체배수용	
	분리기, 물분리용, 액체연료식	
	전동공구류	
2014	분리기, 물분리용, 액체연료식	능력부족
	14년 오리콘용 등명구	계약포기
	하우징, 기계구동장치	능력부족
	플랜지, 구동용	능력부족
	밸브조립체, 포핏, 선체배수용	능력부족

자료 :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42)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 제7조(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 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정비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생산·정비능력확인결과합격한업체(시제품 검사 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또는 규격면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11년 신형전투복은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전투복이 납품되었다. 이 업체는 납기일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품질보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되었다. 15일이라는 짧은 납기 기간으로 인해 납기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인가받은 공장 외에 생산이 승인되지 않은 서울 4개 공장, 부산 4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투복을 납품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바지 밑단의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단추 구멍이 아예 뚫리지 않는 등 내구도 부족, 운용불편 및 착용 시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모든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지퍼는 전제품이 사양서 규격에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전투복을 전량 폐기할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반품할 경우 외부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감액하여 고객인 군으로 보급됨으로써 우리 장병의 권익은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sup>43)</sup>

이처럼 불량전투복이 납품됨으로써 중대한 법적 문제와 예산 낭비와 우리 장병의 권익 손실을 초래한 점을 감안한다면,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은 군수품 조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기존 업체에 대한 확인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 군수품 납기 지연 사례 반복

조달은 국방전력유지 및 운용을 위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물자, 시설 용역 등에 대한 소요를 군 보급체계 내부에 가용하도록 실체화하는 중요한 기능이다.<sup>44)</sup> 군수품은 특히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자 등은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적기 조달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으로 인해 전력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조달품목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납기 지연은 총 1,293건으로 금액 규모는 1조 4,310억원으로 나타났다. 납기 지연 일수가 30일 이내는 282건(2,570억원), 31일~90일 지연은 437건(3,577억원), 91일~180일 지연은 448건(6,766억원)이며,

43) 최재승, 「원칙에 강하라」, 국방기술품질원, 2015, 46~48쪽.

44) 장기덕, 「군수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217쪽.

180일 초과도 126건(1,397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달방법별로 살펴보면, 제조 품목의 납기 지연은 1,180건(1조 3,685억원)으로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품목의 납기 지연은 113건(625억원)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품목은 30일 이내 32건(75억원), 31일~90일 지연이 27건(319억원), 91일~180일 지연이 21건(69억원)이며, 180일 초과도 33건(162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 품목은 30일 이내 250건(2,495억원), 31일~90일 지연이 410건(3,258억원), 91일~180일 지연이 427건(6,697억원)이며, 180일 초과는 93건(1,23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9]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구분	단위	30일이내	31-90일	91-180일	180일초과	계
구매	계약건수	32	27	21	33	113
	계약금액	75	319	69	162	625
제조	계약건수	250	410	427	93	1,180
	계약금액	2,495	3,258	6,697	1,235	13,685
계	계약건수	282	437	448	126	1,293
	계약금액	2,570	3,577	6,766	1,397	14,31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구매 품목의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장비물자분야는 일반장비가 26건(7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장비 19건(135.5억원), 급식유류 11건(278.4억원), 물자 9건(18.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체계분야는 기동화력 16건(50.5억원), 유도무기 16건(2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정 11건(28.3억원), 지휘정찰 5건(16.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180일 초과 지연도 기동화력 3건(2.5억원), 지휘정찰 2건(14.7억원), 함정 4건(16.8억원), 유도무기 3건(2.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0] 구매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구분	지연 일수	단위	장비물자				무기체계					계
			일반 장비	통신 장비	급식 유류	물자	기동 화력	지휘 정찰	함정	항공기	유도 무기	
구매	30일 이내	계약건수	6	1	5	3	5	1	4	0	7	32
		계약금액	5.6	0.5	17	9.4	29.5	0.7	1.4	0	10.7	74.8
	31- 90일	계약건수	7	2	3	4	5	2	0	0	4	27
		계약금액	29.4	18.9	251.2	6.5	10.9	0.6	0	0	1.3	318.8
	91- 180일	계약건수	6	4	3	0	3	0	3	0	2	21
		계약금액	28.3	7.7	10.2	0	7.6	0	10.1	0	5.1	69.0
	180일 초과	계약건수	7	12	0	2	3	2	4	0	3	33
		계약금액	15.4	108.4	0	2.1	2.5	14.7	16.8	0	2.9	162.8
	소계	계약건수	26	19	11	9	16	5	11	0	16	113
		계약금액	78.7	135.5	278.4	18	50.5	16	28.3	0	20	625.4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구매 품목의 연도별 납기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2건(327.3억원), 2014년 33건(221.3억원), 2015년 28건(76.8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신장비는 2013년 8건(60.0억원)에서 2015년 4건(20.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물자는 2013년 6건(13.4억원)에서 2015년 2건(4.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동 화력은 2013년 11건(41.6억원)에서 2015년 2건(4.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함정은 2013년 2건(5.4억원)에서 2015년 7건(11.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31] 구매 분야별·연도별 납기 지연 현황

(단위: 건, 억원)

년도	지연 일수	단위	장비물자				무기체계					계
			일반 장비	통신 장비	급식 유류	물자	기동 화력	지휘 정찰	함정 계약	항공기	유도 무기	
2013	30일 이내	계약건수	4	0	2	2	4	0	1	0	1	14
		계약금액	3.5	0	29	7.2	28.9	0	0	0	3.1	45.6
	31- 90일	계약건수	2	0	2	3	2	0	0	0	2	11
		계약금액	17.4	0	139.9	5.9	3.4	0	0	0	0.5	167.1
	91- 180일	계약건수	3	2	1	0	3	0	0	0	1	10
		계약금액	6.3	0.5	4.7	0	7.6	0	0	0	4.9	24
	180일 초과	계약건수	4	6	0	1	2	2	1	0	1	17
		계약금액	8.8	59.5	0	0.3	1.7	14.7	5.4	0	0.2	90.6
소계	계약건수	13	8	5	6	11	2	2	0	5	52	
계약금액	36	60	147.5	13.4	41.6	14.7	5.4	0	8.7	327.3		
2014	30일 이내	계약건수	1	0	3	0	1	1	0	0	1	7
		계약금액	0.2	0	14.2	0	0.6	0.7	0	0	1.2	16.9
	31- 90일	계약건수	4	0	1	1	1	1	0	0	1	9
		계약금액	8.7	0	111.3	0.5	3	0.1	0	0	0.3	123.9
	91- 180일	계약건수	1	1	2	0	0	0	0	0	1	5
		계약금액	3	6	5.5	0	0	0	0	0	0.2	14.7
	180일 초과	계약건수	1	6	0	0	1	0	2	0	2	12
		계약금액	2.2	48.9	0	0	0.8	0	11.2	0	2.7	65.8
소계	계약건수	7	7	6	1	3	2	2	0	5	33	
계약금액	14.1	54.9	131	0.5	4.4	0.8	11.2	0	4.4	221.3		
2015	30일 이내	계약건수	1	1	0	1	0	0	3	0	5	11
		계약금액	2	0.5	0	2.2	0	0	1.4	0	6.3	12.4
	31- 90일	계약건수	1	2	0	0	2	1	0	0	1	7
		계약금액	3.2	18.9	0	0	4.5	0.5	0	0	0.6	27.7
	91- 180일	계약건수	2	1	0	0	0	0	3	0	0	6
		계약금액	19.1	1.2	0	0	0	0	10.1	0	0	30.4
	180일 초과	계약건수	2	0	0	1	0	0	1	0	0	4
		계약금액	4.4	0	0	1.8	0	0	0.1	0	0	6.3
소계	계약건수	6	4	0	2	2	1	7	0	6	28	
계약금액	28.7	20.6	0	4	4.5	0.5	11.6	0	6.9	76.8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제조 품목의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장비물자분야는 급식유류가 708건(9,1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자 108건(1,363억원), 일반장비 62건(184억원), 통신장비 25건(20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체계분야는 기동화력 113건(5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정 56건(449억원), 유도무기 56건(408억원), 항공기 32건(1,307억원), 지휘정찰 20건(9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180일 초과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장비물자는 급식유류가 37건(8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장비 7건(47억원), 일반장비 6건(8억원), 물자 5건(4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체계는 기동화력이 16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도무기 7건(11억원), 지휘정찰 5건(3.4억원), 항공기 4건(13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제조 분야별 납기 지연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억원)

구분	지연 일수	단위	장비물자				무기체계					계
			일반 장비	통신 장비	급식 유류	물자	기동 화력	지휘 정찰	함정	항공기	유도 무기	
제조	30일 이내	계약건수	36	13	36	54	45	6	22	11	27	250
		계약금액	79	79	430	785	302	8	300	302	211	2,495
	31- 90일	계약건수	14	3	289	27	28	5	22	10	12	410
		계약금액	60	80	2,270	204	108	17	138	202	179	3,258
	91- 180일	계약건수	6	2	346	22	24	3	7	7	10	427
		계약금액	37	2.3	5,514	333	120	9.1	7.5	666	7.4	6,697
	180일 초과	계약건수	6	7	37	5	16	6	5	4	7	93
		계약금액	8	47	893	41	37	57	3.4	137	11	1,235
	소계	계약건수	62	25	708	108	113	20	56	32	56	1,180
		계약금액	184	208	9,107	1,363	567	91	449	1,307	408	13,685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제조 품목에 대한 연도별 납기일 지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18건(5,220억원), 2014년 408건(4,630억원), 2015년 354건(3,835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 제조 분야별·연도별 납기 지연 현황

(단위: 건, 억원)

년도	금액	단위	장비물자				무기체계					계
			일반 장비	통신 장비	급식 유류	물자	기동 화력	지휘 경찰	함정 계약	항공기	유도 무기	
2013	30일 이내	계약건수	12	6	10	24	15	2	7	4	9	89
		계약금액	28	12	43	256	204	6.1	37	51	37	675
	31-90일	계약건수	6	1	91	10	16	1	8	3	4	140
		계약금액	34	67	1,150	40	85	1.0	95	123	127	1,723
	91-180일	계약건수	6	0	124	10	9	2	1	1	4	157
		계약금액	37	0	2,296	133	20	9.1	0.01	74	1.9	2,571
	180일 초과	계약건수	2	3	5	1	9	3	4	1	4	32
		계약금액	6.1	1.0	128	5.6	17	1.5	1.1	90	2.2	252
	소계	계약건수	26	10	230	45	49	8	20	9	21	418
		계약금액	105	80	3,614	435	326	18	133	338	168	5,220
2014	30일 이내	계약건수	14	1	14	17	16	1	9	4	14	90
		계약금액	27	11	246	238	59	0.1	232	148	168	1,129
	31-90일	계약건수	4	1	94	9	7	2	8	4	5	134
		계약금액	9	11	726	60	14	1.4	17	7	8	854
	91-180일	계약건수	0	1	128	8	7	1	2	3	5	155
		계약금액	0	1.2	1,955	115	22	0	1.0	209	4.7	2,307
	180일 초과	계약건수	4	3	6	4	7	1	0	3	1	29
		계약금액	2.1	44	173	35	20	11	0	48	6.5	340
	소계	계약건수	22	6	242	38	37	5	19	14	25	408
		계약금액	38	67	3,100	448	115	13	250	412	187	4,630
2015	30일 이내	계약건수	10	6	12	13	14	3	6	3	4	71
		계약금액	24	56	140	291	39	2	31	102	5	691
	31-90일	계약건수	4	1	104	8	5	2	6	3	3	136
		계약금액	17	1	394	104	9	15	26	72	43	682
	91-180일	계약건수	0	1	94	4	8	0	4	3	1	115
		계약금액	0	1.1	1,264	85	79	0	6.5	384	0.8	1,819
	180일 초과	계약건수	0	1	26	0	0	2	1	0	2	32
		계약금액	0	1.4	593	0	0	45	2.3	0	2.0	643
	소계	계약건수	14	9	236	25	27	7	17	9	10	354
		계약금액	41	60	2,391	480	127	62	66	558	51	3,835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납기 지연은 구매 품목뿐만 아니라 제조 품목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납기 지연은 군수품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가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무기체계 분야와 관련하여 180일 이상 지연되는 품목에는 함정, 자주포, 천마, 지상감시레이더, 항공기 등 주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무기체계의 가동과 관련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sup>45)</sup>

### 라. 사용자 불만 및 사후처리 객관성·공정성 미흡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보증활동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표 34] 품질보증을 위한 시정조치 방법

시정조치	내용
제1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품보원은 구두로 계약업체에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품질보증활동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2방법	경미한 사항이지만 현장에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팀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에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업체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자료: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9조(시정조치)

45) 장비가동률 실적은 2014년 기준 지상장비 91%, 함정장비 66%, 항공장비 76%이다(국방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 국방부, 2016, 제32쪽).

최근 3년간 시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이 8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이 84건,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가 완료된 제품에 한해서 군에 납품된다.<sup>46)</sup>

[표 35] 국방기술품질원 시정조치 현황

(단위: 건)

품보형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단순품질보증형 (Ⅰ형)	계약건수	474	488	413	1,375	
	시정 조치	1방법	4	2	1	7
		2방법	22	24	18	64
		3방법	5	8	0	13
		4방법	-	-	-	0
		소계	31	34	19	84
선택품질보증형 (Ⅱ형)	계약건수	87	143	187	417	
	시정 조치	1방법	-	-	-	0
		2방법	-	-	-	0
		3방법	-	-	-	0
		4방법	-	-	-	0
		소계	-	-	-	0
표준품질보증형 (Ⅲ형)	계약건수	2,272	2,358	2,405	7,035	
	시정 조치	1방법	139	109	91	339
		2방법	189	133	165	487
		3방법	5	17	4	26
		4방법	-	-	-	0
		소계	333	259	260	852
체계품질보증형 (Ⅳ형)	계약건수	293	321	297	911	
	시정 조치	1방법	1	2	7	10
		2방법	-	3	3	6
		3방법	-	-	-	0
		4방법	-	-	-	0
		소계	1	5	10	16
총 납품조서발급		45,831	49,348	50,545	145,724	

자료: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

46) 시정조치는 품질보증활동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납품조서발급 건수 대비 시정조치 건수로 실적이 집계된다. 품질보증형태별 실적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명이다.

품질보증을 거쳐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군지원업무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용자불만 처리는 대군지원업무 중의 하나로써 배치·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기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이다.<sup>47)</sup> 사용자불만은 하자, 규격 및 기술자료 미흡, 개량요구, 계약착오, 사용자 운용 미흡, 통보착오, 기타로 분류된다.

[표 36] 사용자불만 분류

분류	내용
하자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의 결함사항
규격 및 기술자료 미흡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가 미흡하여 운용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사항
개량요구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품질 향상이나 성능개량 등이 요구되는 불만사항
계약착오	계약내용 오기, 현품제시 잘못 등과 같은 발주처의 잘못으로 야기된 결함사항
사용자 운용미흡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정비 및 저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만사항
통보착오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착오로 통보된 불만사항
기타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지 않고, 결함 원인분석이 불가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불만사항

자료: 「대군지원업무규정」 제4조(사용자불만 분류)

최근 3년간 납품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용자불만 현황은 총 393건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불만 원인은 하자가 145건(36.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47) 「대군지원업무규정」 제3조(업무의 구분) ① 대군지원업무는 납품된 제품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치/운영단계에서 소요군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1호 바사목과 제2호를 제외한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질원)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 군수품을 대상으로 한다.

1. 대군 기술지원 업무

가. 사용자불만 처리

배치/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기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

다음으로 기타가 132건(33.6%), 개량요구 47건(12.0%), 통보착오 26건(6.6%), 운용미흡 24건(6.1%), 규격미흡 16건(4.1%), 계약착오 3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현황

(단위: 건, %)

구분	하자	규격미흡	개량요구	계약착오	운용미흡	통보착오	기타	계
2013	53	6	13	1	8	12	33	126
	(42.1)	(4.8)	(10.3)	(0.8)	(6.3)	(9.5)	(26.2)	(100)
2014	53	7	15	0	8	10	53	146
	(36.3)	(4.8)	(10.3)	(0.0)	(5.5)	(6.8)	(36.3)	(100)
2015	39	3	19	2	8	4	46	121
	(32.2)	(2.5)	(15.7)	(1.7)	(6.6)	(3.3)	(38.0)	(100)
계	145	16	47	3	24	26	132	393
	(36.9)	(4.1)	(12.0)	(0.8)	(6.1)	(6.6)	(33.6)	(100)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사용자불만 처리는 신품교체가 총 197건(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비수리 83건(21.1%)으로 나타났다. 이 외 수정납품 11건(2.8%), 부족보충 10건(2.5%), 소요군 교육 20건(5.1%), 소요군 통보 23건(5.9%), 기타 40건(10.2%), 현금변제 3건(0.8%), 법적처리 6건(1.5%)으로 나타났다.

[표 38]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품교체	정비수리	수정납품	부족보충	소요군교육	소요군통보	기타	현금변제	법적처리	계
2013	69	23	6	0	4	8	13	2	1	126
	(54.8)	(18.3)	(4.8)	(0.0)	(3.2)	(6.3)	(10.3)	(1.6)	(0.8)	(100)
2014	60	36	4	5	11	7	17	1	5	146
	(41.1)	(24.7)	(2.7)	(3.4)	(7.5)	(4.8)	(11.6)	(0.7)	(3.4)	(100)
2015	68	24	1	5	5	8	10	0	0	121
	(56.2)	(19.8)	(0.8)	(4.1)	(4.1)	(6.6)	(8.3)	(0.0)	(0.0)	(100)
계	197	83	11	10	20	23	40	3	6	393
	(50.1)	(21.1)	(2.8)	(2.5)	(5.1)	(5.9)	(10.2)	(0.8)	(1.5)	(100)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품류별 사용자불만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류에 대한 사용자불만이 133건(3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류차량류에 대한 사용자불만이 115건(29.4%)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불만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하자는 장류차량류가 총 145건 중 45건(3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미흡도 장류차량류가 총 15건 중 9건(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량요구가 총 47건 중 25건(53.2%), 계약착오가 총 3건 중 2건(66.7%), 운용미흡 총 24건 중 9건(3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식품류는 통보착오와 기타에 대한 사용자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류는 통보착오 총 26건 중 9건(34.6%), 기타 총 131건 중 85건(64.9%)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품류별 사용자불만 현황

(단위: 건, %)

품류	기동	섬유	식품	의무 장비	의약품	일반 보급	일반 장비	장류 차량	화학	계
하자	1	22	33	1	2	16	16	45	9	145
	(0.7)	(15.2)	(22.8)	(0.7)	(1.4)	(11.0)	(11.0)	(31.0)	(6.2)	(100)
규격 미흡	0	2	0	0	0	1	2	9	1	15
	(0.0)	(13.3)	(0.0)	(0.0)	(0.0)	(6.7)	(13.3)	(60.0)	(6.7)	(100)
개량 요구	3	4	2	0	0	4	4	25	5	47
	(6.4)	(8.5)	(4.3)	(0.0)	(0.0)	(8.5)	(8.5)	(53.2)	(10.6)	(100)
계약 착오	1	0	0	0	0	0	0	2	0	3
	(33.3)	(0.0)	(0.0)	(0.0)	(0.0)	(0.0)	(0.0)	(66.7)	(0.0)	(100)
운용 미흡	0	3	4	0	0	6	1	9	1	24
	(0.0)	(12.5)	(16.7)	(0.0)	(0.0)	(25.0)	(4.2)	(37.5)	(4.2)	(100)
통보 착오	1	2	9	1	0	5	2	6	0	26
	(3.8)	(7.7)	(34.6)	(3.8)	(0.0)	(19.2)	(7.7)	(23.1)	(0.0)	(100)
기타	2	4	85	1	0	12	7	19	1	131
	(1.5)	(3.1)	(64.9)	(0.8)	(0.0)	(9.2)	(5.3)	(14.5)	(0.8)	(100)
계	8	37	133	3	2	44	32	115	17	391
	(2.0)	(9.5)	(34.0)	(0.8)	(0.5)	(11.3)	(8.2)	(29.4)	(4.3)	(100)

주: 사용자불만 미기입 2건 제외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최근 3년간 사용자불만처리현황 390건 중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이 289건으로 74.1%를 차지한다. 특히,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의 사용자불만 원인 중 하자가 110건으로 전체 145건 중 75.9%를 차지한다.

한편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은 제품확인감사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프로세스 검증, 품질경영시스템평가를 수행한다. 제품확인감사는 적용규격 및 감사대상 품목 선정, 감사방법 및 내용, 샘플링방법 등을 실시한다.

‘기타’로 판단되는 경우는 총 132건 중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이 105건으로 79.5%를 차지하며,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은 5건으로 3.8%를 차지한다. ‘기타’는 결함 원인 분석이 불가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결함사항이다.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은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이며,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은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한 품목으로 국방 전력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들이다.

따라서 표준품질보증형(Ⅲ형)과 체계품질보증형(Ⅳ형)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다 엄격한 규격 및 기준의 적용을 통해 판별되지 않은 사용자불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표 40]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품질보증형태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단순품질보증형 (Ⅰ형)	선택품질보증형 (Ⅱ형)	표준품질보증형 (Ⅲ형)	체계품질보증형 (Ⅳ형)	특수검사형 (Ⅴ형)	계
하자	26 (17.9)	1 (0.7)	110 (75.9)	8 (5.5)	0 (0.0)	145 (100)
규격 미흡	1 (6.3)	0 (0.0)	13 (81.3)	2 (12.5)	0 (0.0)	16 (100)
개량 요구	2 (4.3)	0 (0.0)	31 (66.0)	11 (23.4)	3 (6.4)	47 (100)
계약 착오	0 (0.0)	0 (0.0)	3 (100.0)	0 (0.0)	0 (0.0)	3 (100)
운용 미흡	4 (19.0)	0 (0.0)	13 (61.9)	0 (0.0)	4 (19.0)	21 (100)
통보 착오	10 (38.5)	1 (3.8)	14 (53.8)	1 (3.8)	0 (0.0)	26 (100)
기타	21 (15.9)	1 (0.8)	105 (79.5)	5 (3.8)	0 (0.0)	132 (100)
계	64 (16.4)	3 (0.8)	289 (74.1)	27 (6.9)	7 (1.8)	390 (100)

\*미가입 자료 3건 제외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또한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의 하자 발생 사례 중 “조끼, 지상근무자용(기본형)”은 사전확인감사에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신품교체”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원부자재감사를 총 7차례에 걸쳐 확인하여 ‘합격’ 처리되었으며, 완제품 감사에서도 4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용자불만이 발생하여 하자 결정과 함께 신품교체가 이루어졌다. 즉,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샘플링 방식을 통해 품질보증이 완료되어 납품됨으로써 실제 납품된 제품 중에는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 41] 조끼, 지상근무자용(기본형) 품질보증 결과

연번	계약일자	품명	품보형태	납품일자	결함내용	조치내용
1	2015-05-21	조끼, 지상근무자용(기본형)	Ⅲ	2015-09-24	하자	신품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규격: KDS 8465-4007</li> <li>○ 감사기준: KDS 0000-3001-2 TI-11(개인장구류)</li> <li>○ 원부자재감사: 7차례(5.6.26~11.2)에 걸쳐 확인: 결과: 합격</li> <li>○ 완제품감사: 4차에 걸쳐 확인: 결과: 합격</li> </ul>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한 업체 계약 품목으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전투조끼류’는 2013년 하자과 운용미흡으로 정비수리 및 소요군 교육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하자가 발생하여 부족보충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신품교체 처리되었다. 본 제품은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 납품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업체는 이 외 2014년과 2016년에도 전투조끼류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8)</sup>

[표 42] 동일 업체 계약 품목에 대한 하자 반복 발생 현황

순번	계약일	납품일	품명	품보형태	결함내용	처리방법
1	2013-05-10	2013-11-06	전투조끼류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3-05-10	2013-11-15	전투조끼류	Ⅲ형	운용미흡	소요군교육
	2014-07-31	2014-12-02	전투조끼류	Ⅲ형	하자	부족보충
	2015-05-21	2015-09-02	전투조끼류	Ⅲ형	하자	신품교체
	2015-05-21	2015-09-24	전투조끼류	Ⅲ형	하자	신품교체

48) 본 업체는 2014.07.31.과 2016.05.23.에 전투조끼류 계약을 완료하였다.

‘조끼’, ‘항공 중무장장착장비’, ‘천막’ 등은 결함내용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상이한 사례이다.

[표 43] 동일 업체 계약 품목에 대한 결함내용 및 처리방법 상이 현황

순번	계약일	납품일	품명	품보형태	결함내용	처리방법
1	2013-07-11	2014-02-27	호스,성형식	Ⅲ형	개량요구	소요군통보
	2013-07-11	2014-02-27	호스,성형식	Ⅲ형	개량요구	신품교체
2	2013-12-04	2014-09-01	선박용 프로펠라	Ⅲ형	기타	정비수리
	2013-12-04	2014-09-01	선박용 프로펠라	Ⅲ형	규격미흡	신품교체
3	2013-06-20	2013-12-05	10톤 상용 구난차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3-06-20	2013-12-05	10톤 상용 구난차	Ⅲ형	개량요구	소요군교육
4	2013-06-24	2013-10-17	지휘용 상용지프차(4륜구동 렉스턴 민수용 짝)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3-06-24	2013-10-17	지휘용 상용지프차(4륜구동 렉스턴 민수용 짝)	Ⅲ형	하자	신품교체
	2013-06-24	2013-10-25	코란도 상용지프차	Ⅲ형	하자	정비수리
5	2013-07-08	2013-12-31	트럭,항공기연료용(급유차 6500G/L)	Ⅲ형	하자	신품교체
	2013-07-08	2013-12-31	항공기 급유차(6500G/L)	Ⅲ형	하자	정비수리
6	2013-05-10	2013-11-15	조끼, 특전부대용(디지털무늬)	Ⅲ형	운용미흡	소요군교육
	2013-05-10	2013-11-06	조끼, 특전부대용(디지털무늬)	Ⅲ형	하자	정비수리
7	2013-06-25	2013-08-08	기능성전투화	Ⅲ형	기타	신품교체
	2013-06-25	2013-09-30	기능성전투화	Ⅲ형	기타	기타
	2013-06-25	2013-08-29	기능성전투화	Ⅲ형	기타	신품교체
8	2013-07-15	2013-10-14	개선 동정비복(상하분리형)	Ⅲ형	기타	신품교체
	2013-07-15	2013-11-28	개선 동정비복(상하분리형)	Ⅲ형	하자	신품교체
9	2014-07-16	2014-12-23	코란도 상용지프차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7-16	2014-12-23	코란도 상용지프차	Ⅲ형	개량요구	소요군교육
	2014-07-16	2014-12-23	코란도 상용지프차	Ⅲ형	개량요구	소요군교육
	2014-07-16	2014-10-08	코란도 상용지프차	Ⅲ형	하자	정비수리
10	2014-11-18	2015-08-25	호스,비금속제	Ⅲ형	하자	신품교체
	2014-11-18	2015-03-26	호스,비금속제	Ⅲ형	규격미흡	1:1교체
11	2014-10-02	2014-12-04	항공 중무장장착장비(JMHU-83D/E)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10-02	2014-12-04	항공 중무장장착장비(JMHU-83D/E)	Ⅲ형	기타	소요군통보
12	2014-06-16	2014-09-30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운용미흡	소요군교육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09-30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하자	정비수리
	2014-06-16	2014-11-27	천막,모듈식,일반체계용(천막,분대용)	Ⅲ형	운용미흡	소요군교육
13	2015-05-21	2015-09-02	조끼,지상근무자용(기본형)	Ⅲ형	하자	1:1교체
	2015-05-21	2015-09-24	조끼,지상근무자용(기본형)	Ⅲ형	하자	신품교체

품질보증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력지원체계분야는 영세·중소 취약업체가 다수이며, 다품종 소량 계약이 대부분인 특성으로 사용자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명이다.

#### 4. 군수품 연구개발(R&D) 분석

##### 가. 연구개발 개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비용부담형태에 따라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 연구개발과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국방부와 산·학·연이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신규개발, 성능개량(품질개선), 정부공동협력사업, 기술개발,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의 대상범위는 방위사업법상 군용장비 국산화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류 및 물자류이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소요기획·제기·결정’, ‘사업계획’, ‘개발관리’, ‘시험평가’, ‘획득·운용’ 단계로 구분된다.

소요기획·제기·결정 단계는 연구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한 기획 및 심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소요는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을 실제 활용하는 각 군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업체나 전문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결정된 소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다. 소요가 결정된 과제는 “국방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군사요구도의 작성이 필요하다.

개발관리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연구개발관리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사업주관기관은 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제안요청서(RFP)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통

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

기술개발 종료 후 실시하는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필요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발시험평가는 기술개발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 시험평가 가능 부대 및 국가공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는 각 군 운용평가시험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기관 및 운영부대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 후 시험평가까지 마친 군수품은 업체생산을 통해 군에 조달된다.

## 나. 국방규격의 낙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이다. 국방규격은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생산품목, 국외구매 품목, 완성장비 수리부속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제정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화업무지침」을 따른다.<sup>49)</sup>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sup>50)</sup>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규격의 제정요구는 국방과학연구소, 해당업체, 각군 등에서 이루어진다.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부대조달되는 품목은 각군이 규격을 제정하게

49)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0조(국방규격 제정범위) 국방규격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생산품목, 국외구매 품목, 완성장비 수리부속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제정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50)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sup>51)</sup>

국방규격 현황은 2016년 8월 기준 총 7,898종으로 방위사업청 1,395종, 육군 1,800종, 해군 1,164종, 공군 717종, 국방과학연구소 2,439종, 국방기술품질원 383종으로 나타났다.

[표 44] 국방규격 현황(2016.08.31.기준)

(단위: 종, %)

구분	방위사업청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기술 품질원	계
규격수	1,395	1,800	1,164	717	2,439	383	7,898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체 국방규격 중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규격은 3,099종으로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정규격은 4,799종으로 6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 국방규격 개정 현황(2016.08.31.기준)

(단위: 종, %)

구분	방위사업청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기술 품질원	계
계	1,395	1,800	1,164	717	2,439	383	7,8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개정규격	793	641	301	304	922	138	3,099
	(56.8)	(35.6)	(25.9)	(42.4)	(37.8)	(36.0)	(39.2)
미개정규격	602	1,159	863	413	1,517	245	4,799
	(43.2)	(64.4)	(74.1)	(57.6)	(62.2)	(64.0)	(60.8)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개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국방규격 제·개정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미만 규격이 2,683종으로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이상 20년미만 규격은 2,254종으로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된 규격은 2,961종으로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개정이 40년 이상된 규격 또한 494건으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국방규격 제·개정일별 현황(2016.08.31.기준)

(단위: 종, %)

기관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40년미만	40년이상	계
방위사업청	729	262	184	153	67	1,395
	(52.3)	(18.8)	(13.2)	(11.0)	(4.8)	(100)
육군	609	612	211	312	56	1,800
	(33.8)	(34.0)	(11.7)	(17.3)	(3.1)	(100)
해군	336	545	126	148	9	1,164
	(28.9)	(46.8)	(10.8)	(12.7)	(0.8)	(100)
공군	123	258	207	98	31	717
	(17.2)	(36.0)	(28.9)	(13.7)	(4.3)	(100)
국방과학연구소	691	397	497	523	331	2,439
	(28.3)	(16.3)	(20.4)	(21.4)	(13.6)	(100)
국방기술품질원	195	180	8	0	0	383
	(50.9)	(47.0)	(2.1)	(0.0)	(0.0)	(100)
총계	2,683	2,254	1,233	1,234	494	7,898
	(34.0)	(28.5)	(15.6)	(15.6)	(6.3)	(10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장기화된 국방규격은 낙후된 시험조건과 부품단종으로 군수품의 품질을 제고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발생시킨다.<sup>52)53)</sup> 또한 과도한 규격 적용은 일부 국방규격 요구 조건이 특정 업체에만 한정되거나 불필요한 시험조건으로 신규업체에게 진입장

5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규격 전면검토를 통한 상용전환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4, 95쪽.

53) 유형곤 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략기술분야 발굴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3, 90쪽.

벽이 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sup>54)</sup>

일부 개인용 장구류 등의 품목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 등의 규격에 성능 개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규격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품질개선 수준에 그치고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55)</sup>

따라서 노후장비에 대한 불합리한 규격을 개선하여 군수품의 품질안정과 획득 비용 절감 그리고 현 시점에 맞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방규격의 개선이 요구된다.

#### 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2014년 4월까지 국내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였다.<sup>56)</sup> 하지만 업체투자 중심의 연구개발은 기술적 통제대책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과 인력 여건 등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었고, 군에서는 필요한 군수품을 적시에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sup>57)</sup>

54) 유형곤 외,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6, 121쪽.

55) 2014년 감사원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현재 제정·운용되고 있는 국방규격은 1970~1980년대에 역설계한 도면이나 해외 도면 카피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후 현실에 맞게 최산화 되지 않은 품목이 많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국방규격을 신뢰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견본품을 대여·참고하여 제작·납품한 실적이 784건에 이르는 등 현 국방규격은 현품과 규격의 불일치 등 오류가 많은 실정이므로 주기적으로 국방규격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국방규격이 폐지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방규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56) 「국방전력발달전업무훈령(시행 2014.4.10.)」 제108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① 연구개발은 국내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며, 그 세부절차는 대상체계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추진한다.

57) 국방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장병들을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설립」, 국방부, 2016.

[표 47] 전력지원체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의 문제점

단계	현 문제점 요약
소요공모·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가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 수행 → 사업투명성 문제로 귀결 우려</li> <li>○소요 및 군사요구도 등 공개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 미비</li> </ul>
군사요구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 주도로 군사요구도 제시</li> <li>○각 군 내에 군사요구도 결정을 위한 전문인력 미비</li> </ul>
개발 및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장기간 소요되거나 업체 사정으로 아예 개발자체가 백지화되는 상황 발생</li> <li>○개발 도중 업체 사정으로 군사요구도를 낮추자고 하는 경우도 발생</li> <li>○각 군에서 수행하나 기술적 전문성 미비 및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적인 관리 곤란</li> </ul>
양산/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개발 후 5년간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하여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수업체의 기회박탈</li> <li>○개발업체에 맞추어진 규격 제정으로 타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li> </ul>

자료: 유형근 외,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6, 121쪽.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과도한 업체투자연구개발 의존으로 인한 결과는 예산낭비, 개발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이어졌다.

먼저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군사요구도 설정으로 인한 개발실패사례를 살펴보면, 탄피 자동계수 장비는 과도한 정밀도 요구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며<sup>58)</sup>, 다목적 연결형 천막은 과도한 경량화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sup>59)</sup>

[표 48]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및 양산 실패 사례

연구개발 대상품목	실패사유	발생원인	비고
탄피 자동계수 장비	계수 오차범위 초과	과도한 군사요구도 설정	사업중단
다목적 연결형 천막	내구도 미흡	과도한 군사요구도 설정	사업중단
투척용 소화기	성능 미달	군사요구도 설정 미흡	사업중단
공드럼 자동세척 장비	군사요구도 미충족	과도한 군사요구도 설정	개발중단

자료: 이동현·김영건,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품질보증 전략 탐색: 정부투자연구개발품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207쪽.

58) 계수 오차를 1PPM으로 설정하였으나, 개발결과 122PPM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필중·최치원, 2014).

59) 이중천막, 출입문 별도 설치를 요구하면서 중량은 100kg으로 제한함에 따라 견고성과 내구성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필중·최치원, 2014).

예산낭비 사례로서 전투용 배낭과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는 최초 비용 대비 343%~423%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비용상승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개발업체가 단가 상승과는 무관하게 성능충족에만 치중한 결과로 평가된다.<sup>60)</sup>

[표 49] 전력지원체계 양산단가 과다 상승 및 개발·전력화 지연 사례

양산 대상품목	발생문제점	발생원인	비고
전투용 배낭	양산단가 상승	비용상승 통제 미흡	소요결정시 대비 343% 상승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양산단가 상승	비용상승 통제 미흡	소요결정시 대비 423% 상승

자료: 이동현·김영건,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품질보증 전략 탐색: 정부투자연구개발품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207쪽.

전력화 지연 사례를 살펴보면, 산악진중버스,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잠수함용 액정전시기, 차기능호위함 다기능표시기, K-11 2차 복합 전지, 일반용 천막, 모의화학탄 등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K-11복합소총의 경우, 개발시 장비운용에 필수적인 2차 전지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으나, 무기체계와의 개발일정이 상이하여 주장비에 비해 후속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등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였다.<sup>61)62)</sup>

60) 이필중·최치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CAIV 적용방안연구, 「한국방위사업학회」 제21권제2호, 2014.

61) 김영건 외,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1, 16쪽.

62) 2016년도 K-11복합소총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7억 1,400만원에서 절반이 넘는 17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다. K-11복합소총은 불량부품에 따른 결함으로 양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납품대금을 챙긴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박성진, “내년 국방예산 38조8천억, K-11복합소총 예산 등은 줄줄이 삭감”, 경향신문, 2015.12.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31057061&code=9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31057061&code=910100), 접속: 2016.11.18.>)

[표 50] 업체투자연구개발의 전력화 지연 사례

사업	개발기간	지연기간
산악진중버스	2008~2012	1년→5년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2008~2011	2년→4년
잠수함용 액정전시기	2009~2013	2년→5년
차기능호위함 다기능표시기	2010~2013	1년→4년
K-11 2차 복합 전지	2010~2012	2년→3년
일반용천막	2011~2013	2년→3년
모의화학탄	2011~2013	2년→3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러한 사유 등으로 최근 3년간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총 4건(10억원)만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업체투자연구개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신규개발	건	1	2	1	4
	예산	5.4	3.5	1.1	1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업체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건 중 2건만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기’는 업체 특혜의혹으로 일시중단 상태이며, ‘적층형 부력재 이용한 구명익’은 업체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연구개발이 취소되었다.

[표 52] 업체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단위: 건,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진행내용
LED 섬광등 세트	2013.02.26.~2014.08.30.	1.8	진행중
GPS 재밍대응 신호처리 장치	2013.12.31.~2016.07.31.	3.6	진행중
○○○ 추진기	2014.06.11.~2016.06.10.	3.5	일시중단
적층형 부력재 이용한 구멍의	2015.01.08.~2017.03.07.	1.1	중단

주: 1. ○○○ 추진기 : 업체 특혜의혹(동종 업체 민원제기)으로 연구개발 일시중단(2016. 6월) 상태임.

2. 적층형 부력재 이용한 구멍의: 업체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연구 개발 취소(사업관리 실무 위원회, 2016.9.2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최근 3년간 정부투자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개발은 10건(75.9억원), 성능개량 2건(6.5억원), 기술개발 2건(22.3억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14건(6.1억원),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4건(2.9억원)이다.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부·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은 최근 3년간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정부투자연구개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신규개발	건	6	3	1	10
	예산	39.9	34.7	1.3	75.9
성능개량 (품질개선)	건	0	0	2	2
	예산	0.0	0.0	6.5	6.5
기술개발	건	0	2	0	2
	예산	0.0	22.3	0.0	22.3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건	4	4	6	14
	예산	1.6	1.8	2.7	6.1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건	1	0	3	4
	예산	0.7	0.0	2.2	2.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정부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개발은 완료 2건(7.3억원), 진행 중 7건(57.5억원), 중단 1건(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성능개량은 진행중 2건(6.5억원)이며, 기술개발은 진행중 2건(22.3억원)이다. 선행연구 14건(6.1억원)과 정책연구 4건(2.9억원)은 모두 완료되었다.

[표 54] 정부투자연구개발 진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완료	진행중	중단	계
신규개발	건	2	7	1	10
	예산	7.3	57.5	11.1	75.9
성능개량 (품질개선)	건	0	2	0	2
	예산	0.0	6.5	0.0	6.5
기술개발	건	0	2	0	2
	예산	0.0	22.3	0.0	22.3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건	14	0	0	14
	예산	6.1	0.0	0.0	6.1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건	4	0	0	4
	예산	2.9	0	0.0	2.9

주: 중단 과제: 함상복 함상화 소재개발, 업체 계약 불이행(원단 소재 개발목표 미달성, 시제품 미제시)으로 사업중단 및 계약 해지(2016.7.2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무기체계는 정부(군)가 주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나, 전력지원체계는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인력부족 및 전문조직 부재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군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sup>63)</sup>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과도한 업체투자 의존,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술 활용 부족, 자체연구 역량 부족, 기술정보관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훈령을 개정하여, 지금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및 정부·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64)</sup> 하지만 시행초기로서 안정적인 소요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

63) 김영진 외,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1.

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투자연구개발 확대, 전문인력 등 전문성 강화, 민군기술협력 강화, 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65)</sup> 이를 위해서는 낙후된 국방규격의 정비와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연구·기획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육군 획득군수차관실 예하의 PEO Soldier<sup>66)</sup>와 물자사령부 예하의 NSSC(Natick Soldier Systems Center)<sup>67)</sup>, 프랑스 군합동조달국 산하의 연구제작국<sup>68)</sup> 등의 사례가 있다.

## 5. 시설공사 조달계약

### 가. 시설공사 개요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제3호 및 제4호<sup>69)</sup>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각

6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4.5.26.)」 제109조(연구개발 구분)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비용 분담에 따라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국방부와 산·학·연이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

② 연구개발은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신규개발, 성능개량(품질개선), 정부공동협력사업, 기술개발,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③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한하여 사업을 통제할 수 있다. 각 군 또는 해병대는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며, 이 경우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방사청에서 사업통제를 실시한다.

⑤ 성능개량(품질개선)은 제91조(성능개량)을 참고하여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를 적용한다.

⑥ 정부공동협력사업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65) 윤문섭 외,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방향과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방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36~39쪽.

66) PEO Soldier에서는 병사들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모든 장비들의 개발 및 전력화 사업 수행한다(헬멧, 전투화, 전투복, 침낭 등).

67) NSSC에서는 미군의 부대 유지와 보호를 위한 식량, 피복, 구난, 공중투하 시스템 및 지원 물자류의 연구개발, 부대배치 및 운영유지 지원을 담당한다.

68) 연구제작국에서는 군의 일반물자의 개발연구, 제작 및 품질보증을 관장한다.

69)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

각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방시설은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다. 그런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는 다소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예산상 방위력개선비에 포함된 시설은 무기체계이고, 전력운영비에 포함된 시설은 전력지원체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예산안에는 종래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왔던 일부 사업이 국방부 전력운영 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다.<sup>70)</sup>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수반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71)</sup>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관장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는 무기체계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sup>72)</sup>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시설공사는 각군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제5호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공사·용역의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시설공사 및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국군재정관리단이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단위로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등의 계약을 담당한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한 시설계약건수는 총 3,756건으로 4조 700억원 규모

---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70) 국방부는 ①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 시설예산을 국방부 전력운영 시설예산(2500)으로 통합, ②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없는 시설사업인 단위시설사업과 육군 부대개편시설사업을 국방부로 이관 완료하여, 국방시설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춰 정책특성에 맞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71)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2)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무범위에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제2호는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체계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이 원칙적으로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시설에 관한 사무도 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군수품에 시설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위사업법」의 체계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다. 2013년은 1,384건(1조 6,188억원)이며, 2014년은 1,176건(1조 2,565억원), 2015년은 1,196건(1조 1,947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건 이상 1조원 이상 규모의 시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5] 국군재정관리단 시설공사 현황

(단위: 건, 억원)

년도	단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계
2013	계약건수	374	242	757	11	1,384
	계약금액	1,044	3,130	10,574	1,441	16,188
2014	계약건수	279	235	651	11	1,176
	계약금액	117	4,583	6,647	1,218	12,565
2015	계약건수	346	298	538	14	1,196
	계약금액	114	3,543	4,423	3,867	11,947
계	계약건수	999	775	1,946	36	3,756
	계약금액	1,275	11,255	21,644	6,526	40,700

자료: 국군재정관리단 제출 자료

#### 나. 시설공사 조달주체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sup>73)</sup>은 수요기관인 국가기관은 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조달에 있어 군수품은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제7항<sup>74)</sup>과 제33조(국방부)제5항<sup>75)</sup>에 따라 조달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74)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하고 있지만, 일반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이 아닌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단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은 “국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6)</sup>

이에 근거하여 국방시설공사 계약은 2011년까지 각군에서 직접 수행해 오다가, 2012년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을 설치하여 사업단위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중앙계약)을 체결하게 한 바, 공정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75)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76)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56] 국군재정관리단 시설계약 근거규정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 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 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한다.

1.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
  - 가.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다만 사업내용 중 관급자재 구매계약은 제2호의 규정에 따름
  - 나.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
    - 1)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2)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다. 건설관련(설계·감리·조사 등)용역 및 폐기물처리 용역 : 고시금액 이상

최근 3년간 국방 분야에 있어서 조달청에 시설계약을 요청한 실적은 모두 31건으로서 금액기준으로는 256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표 57] 최근 3년간 국방 분야 조달청 시설계약요청 실적(2015.12.22.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국방부	계약건수	-	-	-	-
	계약금액	-	-	-	-
소속기관 (국립현충원 등)	계약건수	10	12	9	31
	계약금액	47	175	34	256

주: 1. 중앙조달계약은 각 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  
 2. 하위기관은 방위사업청, 해군군수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등 627개 기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2호에 따라 스스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특수성으로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 등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 국가기관과 달리 부대조달하되, 국방부 직할 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군이 평시에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조직으로서 전시조달의 연속성 및 지속성 보장 등을 감안하여 시설공사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2호의 “국방과 관련”은 법률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성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국방 분야의 모든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실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시설공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국방과 관련”된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부와 조달청은 2005년에 군 시설공사계약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sup>77)</sup>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표 58]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국방부와 조달청 간에 군 일반시설공사를 조달청이 계약 체결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달요청의 범위 및 조달수수료를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달요청의 범위) ① 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과 육·해·공군본부를 포함한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군용시설 이전공사와 전력투자공사를 제외한 일반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국방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직접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수품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국군재정관리단 등 부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와 조

77) 별첨 참조

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 각호와 같이 국방상 기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1항과 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동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 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하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달청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 조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은 무기체계 조달과 더불어 국방전력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국방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장비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예산의 효율성 제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조달사업에 있어서는 품질의 우수성, 적기성, 효율성, 공정성(투명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전력지원체계 등 국방조달에 있어서는 품질의 우수성과 적기성 등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군수품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달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조달기관 및 조달품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당사자인 부대와 공급업체 간의 직접 계약보다 제3자인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의 조달비중은 2006년 88.2%에서 2015년 72.9%로 감소하였고, 조달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 수준이었다가 2013년부터 16%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대조달은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에 10.2%로 증가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가운데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에 주력하고, 무기체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급식유류 및 물자 등은 조달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을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구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개전초기 외부의 수리부속 공급이 없어도 일정기간(60일) 장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비축해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5년 기준 전체 확보율은 수량 기준으로 전체 42.1%이며, 군별로는 육군 36.6%, 해군 93.1%, 공군 99.4%이다. 이 가운데 특히 육군의 경우 현실적으로 목표수량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목표조정 및 확보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식유류 등 군수품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특성상 수의계약 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급식유류, 물자 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품목유형별(금액기준)로 보면 급식유류 38.2%, 물자 56.5% 등 일반상용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도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의계약 가운데 자활용사촌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의 생산설비·능력과 단체간의 형평성 그리고 범정부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업체 반복계약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 가운데 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이행보다 선별적인 장기계속계약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품의 적기성 및 군수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의 경우, 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계약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탓도 있으므로 업체의 생산능력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0일 이상 등 납기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납품의 지연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장륜차량의 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식품과 장륜차량은 다른 품목 대비 납품된 제품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용자불만이 많을 수는 있는데 보다 집중적인 품질보증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인 제Ⅲ형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조정하는 한편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품질의 우수성 확보차원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방규격 제·개정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미만 규격이 2,683종으로 약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이상 20년미만 규격은 2,254종으로 약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된 규격은 2,961종으로 약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개정 후 40년 이상 경과된 규격 또한 494건으로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첨단

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생산기술과 소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되거나 신규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낙후된 국방규격의 정비와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연구·기획할 수 있도록 전력지원체계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시설공사 계약주체를 수요당사자인 부대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가 아닌 조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정금액 2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모든 시설공사 계약은 각군에서 체결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달청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 조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016년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2016.
- \_\_\_\_\_, 「국방규격 전면검토를 통한 상용전환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4.
- \_\_\_\_\_, 「신규 계약업체 지원을 위한 군수품 품질보증 워크북」, 국방기술품질원, 2015.
-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 5. 11). 2016.
- \_\_\_\_\_,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장병들을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설립」, 국방부, 2016.
- \_\_\_\_\_,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 \_\_\_\_\_, 「2016년도 성과계획서」, 국방부, 2016.
- 길병욱 외, 「효과적인 군수예산 집행을 위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 김영건 외,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1.
- 방위사업청, 「급식유류팀 간담회 자료」, 2016 방위사업청 조달기업 간담회, 2016.
- 백승호 외, 「국방품질보증방법론」, 법문사, 2011.
- 신인호,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한다 :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국방저널」 통권 제484호(2014년 4월), 국방홍보원, 2014, 13~17쪽.
- 우재용·장기덕, 「수리부속 조달 효율화를 위한 발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87호, 2013.
- 유형곤 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략기술분야 발굴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3.
- \_\_\_\_\_,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16.
- 윤문섭 외,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방향과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방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이동현·김영건,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품질보증 전략 탐색: 정부투자연구개발품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203~222쪽.
- 이영욱·김호용, 「군수관리개론」, 노드미디어, 2009.
- 이필중·최치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CAIV 적용방안연구」, 「한국방위사업학회」 제21권 제2호, 2014, 50~69쪽.
- 장기덕, 「군수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장지홍, “군수물자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제도 적용에 관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364호 (11-24), 2011.
- 조달청, 「조달사업통계연보」, 조달청, 2016.
- 조달품질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 조달품질원, 2016.
- 최기출, 「획득군수관리론」, 21세기군사연구소, 2009.
- 최재승, 「원칙에 강하라」, 국방기술품질원, 2015.

## [부록 1]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 1. 전투지원장비(부품)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일반차량	승용차	승용차(대, 중, 소, 경형) 등
	트럭류	표준차량 카고(4종), 상용트럭 등
	트레일러	화물트레일러, 25톤 세미트레일러 등
	버스류	버스(대, 중, 소형) 등
	오토바이	이륜, 산악오토바이(4륜) 등
특수차량	폭발물처리차량	1 1/4톤 폭발물처리차, 다목적 폭발물처리차 등
	물자취급/운반차량	무장견인차, 리치스테커, PLS 차량, 5톤 관절식 유압크레인, 25톤 크레인 등
	소방차량	인명구조소방차, 소방차 등
	근무지원차량	제설차, 살수차, 급수차, 청소차, 취사차 등
	정비지원차량	기계공작차, 5톤 수리부속 밴차 등
전원·동력장치	전원공급기	미스트랄신공통합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등
	충전기	표준 충전기 등
	발전기	육상발전기, 함정발전기 등
	추진계통	함정 가변추진기, 워터젯 추진기 등
	엔진	발전기 엔진 등
	로터	항공기 프로펠러 등
감시지원장비	탐지장비	땅굴 탐사장비, 슈미트 망원경, 지상라이다, 공중라이다, 레이더 전시기 등
	수중측정장비	측심기, 다중빔 음향측심기, 유향유속기 등
	항해지원장비	상용 GPS, 선박자동식별장비, 항해기록장치(VDR) 등
정비장비	항공정비장비	직접지원장비, 야전점검장비, 균형조정기 등
	화력정비장비	총포정비장비, 사격회로시험기 등
	기동(차륜)정비장비	매연/엔진/차량검사기, 전조등시험기, 차륜평형기 등
	궤도정비장비	궤도용 제청기, 로드휠 2차용 고무제거기 등
	특수무기정비장비	특수무기용 시험셋 등
	함정정비장비	건식/습식 선체청락기, 함정용 엔진검사기 등
	통신전자정비장비	고출력측정기, 회로시험기 등
	일반정비장비	페인트분무기, 연료분사시험기, 각종 용접기, 고정구, 진동기 등

탄약·유도탄 장비	탄약관리장비	무기고/탄약고 통제시스템, 전동스택커 등
	탄약처리장비	EOD 로봇, X-RAY 촬영기, 물포총, 금속탐지기, 폭발물처리 특수공구셋 등
	탄약지원장비	대량탄약 조립장비, 승강용 폭탄식 트레일러 등
	탄약정비장비	분사제청기, 자동컨베어, 스텐실 절단기, 모노레일 등
	탄약검사장비	회로시험기, 탄약시험셋, 선형가속기, X-RAY 장비시스템 등
	유도탄정비장비	구동장치시험셋, 탄운차 유압장치시험셋, 유도탄보관소 제습기 등
전투지원 일반장비	수중작업장비	고수압절단기, 폴리우레탄폼 발사기, 산소분석기 등
	항공기타장비	고소작업대, 항공기세척기, 조류퇴치장비, 항공유도장비 등
	함정기타장비	잠수자추진기, 심해·천해잠수기셋, 조수기, 보조보일러, 구명정·보트 등
	경유/유수기	유수분리기, 오수처리기 등
	펌프	청수펌프, 해수펌프, 급수펌프, 비상점화펌프, 잠수펌프 등
	통풍기	함통풍기, 통풍기세트 등
	압축기	공기압축기, 냉동압축기, 컴프레샤 등
	조명장비	이동형 활주로 조명장비, 이동형 탐지등, 조명지원차 등
측정장비	온도측정장비	디지털식 장약 온도계, 자동온도지수측정기 등
	압력측정장비	압력비교검사기, 압력계이지조정기, 수압시험기 등
	신체측정장비	체격측정기, 자동체형측정장비 등
	기상측정장비	낙뢰관측장비, 표준(디지털)기압계, 토양수분측정기, 해무관측라이다, 기상정보지원기, 자료수신기 등
	기타측정장비	미끄럼 측정장비, 산화안정도시험기 등
통신전자장비	유선장비	교환기, 분배기 등
	무선장비	무전기, 안테나, 조난통신기, 조난자무선식별장비 등
	다중장비	무선단말장비, 무선중계기 등
	위성장비	인마셋, 트라야, 위성TV 수신기 등
	전산장비	주전산기 등
	기타	전파환경측정/분석기, 앰프 등
근무지원장비	소방장비	친환경 자동소화장치 등
	세탁/세척장비	대형세탁기, 공드럼세척기, 엔진세척기, 세탁트레일러 등
	냉난방장비	항온항습기 등
	물자취급장비	지게차, 다기능 지게차, 크레인 등
	제설장비	자동제설장비, 제설기, 제설용 송풍기 등
	연료장비	연료재보급장비, 이동형유류시험소 등
	건설장비	도자, 그레이더, 로더, 휴대용 착암기 등
	취사장비	취사트레일러 등
수리부속	수리부속	각종 장비 수리부속류

## 2. 전투지원물자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방탄류	방탄복	다목적용 방탄복, 특수목적용 방탄복, 다기능방탄복, 방탄담요 등
	방탄헬멧	방탄헬멧 등
	방탄판	방탄복용 방탄판, 차량용 방탄판, 전차용 방탄판 등
	전투용안경	전투용안경 등
피복·장구류	일반 피복류	전투복류, 잠바류 등
	특수 피복류	전차병복, 비행복, 비행잠바, 대테러복, 정비복류 등
	방한 피복류	기능성 방한복, UDT 방한복, 스키복 등
	침구류	침낭류, 담요류, 이불류, 베개류 등
	기타 피복류	내의류, 잡화류, 요대 등
	개인 장구류	개인장구용요대, 탄입대, 의류대, 수통피 등
	부대장구류	조끼류(특전용, 전투용 등), 방충두건, 예초기 안전장구류셋, 헌병장구류 등
식량류	원품류(반가공품)	농·축·수산물 124종
	일반가공식품류	고추장, 건빵 등 108종
	특수식량류	전투식량(1형, 2형, 즉각취식형), 특전식량, 구명식량 등
화학물자류	고무제화류	전투화류, 고속정 전투화, 방한화 등
	페인트류	작용제저항성 페인트, 방오도료, 프라이머 코팅(탄약정비용) 등
	정수약품류	정수제, 중균제 등
	화생방부수자재류	보호의 휴대낭 등
	방역약품	모기향, 살충제 등
	화공약품	프레온 가스, 유황, 에칠렌글리콜, 질소가스 등
	기타 화학물자류	금속보수(코팅)재 등
유류	일반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윤활유	엔진오일, 작동유, 그리스, 솔벤트 등
특수섬유물자	천막류	개인·분대·일반 천막, 지휘소용 천막 등
	낙하산류	대인용 낙하산류, 항공기감속용 낙하산류, 동력행글라이더 등
탄약·유도탄물자	보급/저장재료류	탄두슬링, 팔레트슬링, 팔레트, 대철, 조임기, 봉인기, 절단기 등
	포장재료류	철상자, 링크, 탄구전고리, 목상자, 지환통 등

전기전자물자	전신물자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팩스) 등
	조명물자	조명기기류(조명등, 전구류 등)
	건전기	망간전지, 리튬전지 등
	기타	위키토키, CCTV, 스피커, 마이크 등
근무지원물자	군장품류	각종 부착물 및 계급장류, 깃발, 부대기, 신호깃발 등
	공구류	축성도구, 장비정비용 공구 등
	사무기기류	복사기, 세절기, 책상, 의자 등
	취사기구류	소부대 취사셋, 보온식판, 식판, 수저 등
	냉·난방기구류	에어컨, 히터 등
	컨테이너	이동형 목욕(샤워)용, 이동형 세탁용, 영현용, 특수목적용 등
	소화기구류	소화기(5명, 10명 등) 등
	기타 근무지원물자	덮개류, 캔버스류, 일반보급 기타품목 등
인쇄물자류	사진류	전자사진식자류, 사진식자부수류, 전산사진식자시스템 등
	인쇄기기류	전자동 복사인류(전자동 복사인쇄기 등), 전자마스터 제판류 등
	기록물보존류	기록물보존 M/F 제작류(M/F 촬영기, M/F 현상기) 등

### 3. 의무지원물품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의무장비	치과장비	컴프레샤, 치과유니트 등
	외과장비	마취기, 청력계 등
	영상장비	엑스선촬영기, 필름현상기 등
	병리장비	전해질분석기, 원심분리기, 뇨검사기 자동식 등
	병원장비	소독기 소형, EO가스 소독기, 환자관찰장치 등
	기타 의무장비	중형구급차, 개선형 구급차, 연막소독기 150형·400형 등
의무물자	의약품	예방/치료약품, 치료제, 수의약품, 한방약품 등
	의료기재	귀마개류, 기구류, 소독품류 등
	의무비품	분무기, 환자용 침대, 진료대 등
	위생재료	아말감류, 큐렛류 등
	영상재료	스크린류, 필름 및 현상용 기재류 등
	운용소모품	산소 실린더, 산소 레귤레이터 등
	안경	저시력자용 안경, 방독면 안경 등

### 4. 교육훈련물품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용장비	중대급 마일즈 장비, 기계화대대 훈련용 마일즈 장비, 비행절차훈련장비(CPT) 등
	교육지원장비	실험실습장비, 전자철판 등
	정훈장비	홍보영상차량 등
교육훈련물자	교보재류	빔프로젝트, 환등기, 특수교보재, 교육훈련 보조교육 체계, 폭탄용 투하기 등
	정훈물자	고성능카메라, 영상기, 악기류 등
교육훈련용탄약		적재훈련탄, 장전훈련탄, 모의탄, 모의신관, 적재탄, 조류퇴치탄 등

## 5. 국방정보시스템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자원관리 정보체계	기획·재정 정보체계	조직정원관리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등
	인사·동원 정보체계	국방통합인사정보체계, 국방동원정보체계,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군수·시설 정보체계	군수통합정보체계, 육·해·공군 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단약정보체계, 국방수송정보체계 등
	전자·행정 정보체계	홈페이지 및 포탈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국방통합전자도서관체계 등
국방M&S체계	분석용	전시자원소요산정모델, 전투근무지원분석모델 등
기반운영 환경	정보통신망	무기체계를 제외한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서버장비(서버), 개인장비(PC), 저장장비, 입력장비, 기타 부수장비, 회의장비, 기본 소프트웨어
	사이버방호체계	공통/기반보호체계, 네트워크보호체계, IT플랫폼보호체계, 응용체계보호체계, 보호관리체계
	상호운용성체계	공통운용환경체계, 데이터공유환경체계, 상호운용성평가체계, 정보기술표준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체계, 국방M&S표준자료체계

## 6.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중분류	소분류	대상장비
군사시설		-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등 -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등 - 군용 물자장비·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등 - 진지구축시설 등
		-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등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 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력지원체계

## [부록 2] 전력지원체계 예산 현황

### 1. 군수품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예산(A)	2017년 예산안(B)	증감(B-A)
합계		6,465,177	6,627,287	162,110
[급식 및 피복]		2,065,814	2,086,581	20,767
급식비	소 계	1,570,188	1,585,527	15,339
	기본급식	1,451,880	1,467,570	15,690
	증/특식	94,384	94,739	355
	특수식량	23,924	23,218	△706
피복비	소계	495,626	501,054	5,428
	기본피복	139,003	366,627	227,624
	특수피복	356,623	134,427	△222,196
[군수지원 및 협력]		4,399,363	4,540,706	141,343
장비 획득	소계	401,398	404,912	3,514
	기동장비	174,894	165,987	△8,907
	화력장비	11,505	15,134	3,629
	항공장비	52,609	41,154	△11,455
	함정장비	47,276	46,837	△439
	통신전자장비	47,363	38,862	△8,501
	일반장비	49,469	65,467	15,998
	특수장비	26	4,712	4,686
	정밀측정장비	4,798	6,316	1,518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13,458	20,443	6,985
물자 획득	소계	197,363	247,684	50,321
	공병물자	26,395	29,417	3,022
	병참물자	127,215	169,812	42,597
	통신물자	26,003	30,276	4,273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예산(A)	2017년 예산안(B)	증감(B-A)
	화학물자	10,428	11,147	719
	물자유지	7,322	7,032	△290
장비 유지	소계	2,631,907	2,812,684	180,777
	기동장비	655,804	690,842	35,038
	화력장비	101,099	122,527	21,428
	항공장비	1,000,685	1,070,658	69,973
	합경장비	358,625	383,296	24,671
	통신전자장비	176,149	183,719	7,570
	일반장비	52,382	57,110	4,728
	특수장비	252,804	248,173	△4,631
	정밀측정장비	2,417	2,407	△10
	정보체계	31,943	53,952	22,009
연료확보	소계	712,519	600,756	△111,763
	취사연료	26,410	23,282	△3,128
	난방연료	144,075	134,796	△9,279
	장비연료	537,045	437,355	△99,690
	포장용기 및 기타	4,989	5,323	334
수송활동	수송활동	63	59	△4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및안전관리	1,208	1,801	593
교육용 탄약	소계	367,974	381,753	13,779
	지상교육용탄약	231,584	235,713	4,129
	함포교육용탄약	45,376	53,228	7,852
	항공교육용탄약	90,087	91,786	1,699
	주요기관	927	1,026	99
	교육용탄약			0
탄약 관리	소계	86,931	91,057	4,126
	탄약정비	75,921	79,687	3,766
	비군사화	11,010	11,370	360

## 2. 시설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합계		1,470,200	1,540,670	70,470	
병영 기본 시설	소계	232,207	236,332	4,125	
	병영생활관	91,802	104,369	12,567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140,405	131,962	△8,443	
간부 주거 시설	계	169,930	128,633	△41,297	
	관사 및 간부숙소	154,217	128,633	△25,584	
	공군19비	15,713	0	△15,713	
	아파트 건립			0	
일반 시설 개선	계	888,649	971,980	83,331	
	환경보전시설	106,509	104,036	△2,473	
	정비 및 보급시설	188,102	210,078	21,976	
	일반지원시설	574,791	606,076	31,285	
	국방통합정보	0	0	0	
	관리소 신축			0	
	국방부별관	19,247	0	△19,247	
	리모델링			0	
	15비 지휘기	0	0	0	
	수용시설 보강			0	
	육군훈련소	0	0	0	
	다목적강당			0	
	사이버사령부	0	11,195	11,195	
	155mm 교체시설	0	11,667	11,667	
	사동항 전진기지	0	6,020	6,020	
	공군 활주로	0	4,744	4,744	
	재포장			0	
	항공정보단 창설	0	10,679	10,679	
	항공우주	0	3,333	3,333	
	작전본부 신축			0	
	작전지휘부	0	1,073	1,073	
	시설교체			0	
	777사 작전 및	0	3,080	3,080	
	행정시설 신축			0	
	시설유지 관리	계	178,333	203,725	25,392
		시설유지관리	178,333	203,725	25,392



## [부록 3] 자활용사촌 및 복지공장 현황

### 1. 지원배경

- 1950년대 후반 각 軍병원 및 국립정양원에 장기 입원중인 6·25 중상자들이 귀향하지 않고 집단거주
  - 각 군(軍)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지 무상증여
  - 보훈처에서 주택 및 복지공장 건립 지원
- 1971. 12. 21, 용사촌관리규정(훈령 제271호)을 제정하여 용사촌 설립 제도화 (1급 중상이자 20인 이상)
  - 이후 월남 참전용사, 보훈병원 장기입원환자 중심으로 용사촌 결성
  - 보훈처 주관으로 주택 및 복지공장 운영지원

### 2. 용사촌 현황

- 설립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
- 설립요건
  -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회원 20명 이상으로 동일 행정구역에 집단거주
  - 회원의 공동투자에 의한 복지공장 운영,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통하여 자립자활 도모
- 지역별 용사촌 현황: 전국 25개소
  - 총 582가구, 가족수 1,172명 ('16년 9월말)
  - 복지공장 운영 용사촌: 18개

합계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25	7	7	1	1	1	3	1	1	1	1	1

### 3. 복지공장

#### □ 대방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대방용사촌 (정석환)	구입 (4,761)	3,700	군용양말	40	직접

#### □ 화랑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화랑용사촌 이결	구입 656	1,400	군용동내의, 군용목도리	15	직접

#### □ 충무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충무용사촌 복지공장 최희용 외 7명	임차 320	22	형광등기구	18	직접
			다운라이트설비		
			투광조명		
			수중조명등		
			정원또는공원등		
			도로조명설비		
LED조명					
실물모형					
(주)충무용사촌 최희용	임차 1,401	50	훈장(사도메달)외 훈장(무공훈장)외	8	직접

□ 춘천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대한보훈산업 (김창수)	구입 (872.5)	84.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6	직접
			학생용 책상(2인용)		
			높낮이조절식 책상 및 의자		
			수강용 책상 및 의자		
			하이백의자		
			돌망태몸통		
			돌망태뚜껑		
용접철망					
난간 및 올타리					

□ 범우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이천유골함 공장 (이성훈 외 9명)	건물소유 부지임차 422	건물80, 임차3	유골함	15	직접
			명패		
			안치단		
화성올타리 밴드공장 (이성훈)	임차 412	2.5	올타리	2	직접
			난간		
			밴드		

□ 동산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동산용사촌 복지공장 (강택심외 15명)	임차 (664)	50	책표지	4	직접
			결재판		
			채권서류철		
			PC약봉투		
			탈취제		
			문서파일		
			태극기		
			문서보존상자		
			진행문서파일		
			바인더		
프린트 및 복사용지					
신문용지절지					

□ 부산의용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부산의용촌 GNT (이일환)	구입 (1,554)	1,732	방한복 상외피	361	직접
			동·하 전투복		
			동·하 운동복		
			일반 피복		
			경찰복		
남녀 근무복					
기동복					

□ 평화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평화용사촌 복지공장 도학길	구입 957	715	화섬매트리스 카바	155	직접
			홀이불(이불카바)		
			솜이불 및 카바		
			베게 및 카바		
			전투복		
			춘추운동복상,하(군용)		
일반용장갑(군용)					
전피장갑(군용)					

□ 보광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보광 유공자 산업(주) 이규달	임차 247.8	임대보증금: 10 임대료(년): 17	조립식구조물	8	직접
			도로시설물(버스승강장)		
			싸인물(간판)		
			안전표지판(안내판 등)		
			건물번호판		
			교통신호등		
			이동식간이매점		
교통신호등					
옥내외광고물					

□ 보은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sup>2</sup> )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육가공사업소 (양운영)	구입 자가 대지 (11,092m <sup>2</sup> ) (3,355평) 건물 (공장/냉동창 고 포함): (6,912m <sup>2</sup> ) (2,091평)	토지:4,026 건물:1,674 기계장치:4,936 기타장비:899	식육가공품 (햄슬라이스, 치킨너겟/치킨팝콘 삼계탕, 꼬리곰탕/사골곰탕, 떡갈비/햄/소시지, 치킨가스/버팔로, 햄패티/미트볼, 비엔나소시지, 돈까스/생선가스, 오리훈제/닭강정, 생선튀김류, 왕/봉/텐더스틱)	121	직접
전력사업소 (양운영)	임차 대지: (2,157m <sup>2</sup> ) 건물(공장) 840.4m <sup>2</sup>	임대보증금:35 기계장치:900	배전반, 개폐시스템	12	직접
광주사업소 (양운영)	임차 대지: (1,556m <sup>2</sup> ) 건물(공장: (494m <sup>2</sup> ))	임대보증금:25 기계장치:850	자동제어반	7	직접
수문사업소 (양운영)	임차 대지 (3,433m <sup>2</sup> ) 건물(공장: (490m <sup>2</sup> ))	임대보증금:20 기계장치:580	수문 권양기 가동보	2	직접

□ 시흥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sup>2</sup> )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시흥용사촌 (이광로)	자가 3,728.70	1,579	pvcc에멀전 텍스트린접착제 잉크, 페인트류 각종 플라스틱카드 제조 및 부대사업 난간 및 울타리 스마트카드단말기 살균제류, 동물용의약품 완금, 완철밴드, 전기용밴드 면상발열체, 판열필름 견장 및 어깨장식 비금속명판 나무상자	30	직접

□ 신창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신창중상이 용사촌(주) (김영덕)	임차 723.7	50	관급규격봉투	8	직접
신창중상이 용사촌(주) (김영덕)	임차 4,640	50	가드레일 가로등주 조명탑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강관전주 방음관및방음벽 금속기둥(방음벽지주용)	6	직접
(주)신창 자활용사촌 (김영덕)	임차 9,115	20	조립식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	12	직접
(주)신창 중상이용사촌 복지공장 (김영덕)	임차 546	30	고춧가루	3	직접

□ 십자성마을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십자성 위재공업사 (구영화)	구입 2,262.24	본사(토지,건물) 1,029 공장(토지,건물) 2,907 (공시지가 기준)	거즈봉대 가제 탈 지 면 팩가아제 복부용패드 탄력봉대 솜봉대	26	직접
(주)십자성 (구영화)	임차 669.07	50	의료용 살충제	5	직접
십자성중전기(주) (구영화)	임차 39,947	38	경완철 전선관 지중선로(P.E)보호관	16	직접

□ 전우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전우용사촌(주) (이성근)	자가 3,123	1,577	회계전표 또는 전표책	56	직접
			포스터		
			신문		
			정기간행물		
			여가용도서		
			(부수적으로 제작되는 전자복포함)		
			교육용 또는 직업용도서		
			작동 및 교육메뉴얼		
			홍보물 또는 연간보고서		
			장부용지		
			티켓		
			달력		
			종이패드 및 공책(수첩, 절지류)		
			봉투		
			교육용인쇄지 또는 팜플렛		
			양식용지 또는 질의서		
			(보고서통지서명세서신청서의뢰서조사표전보카드류)		
			CD		
			일반행정공통서식		
			컴퓨터출력용지(전산디자인포에 한함)		
데이터관리용역					
(고지서 및 안내문출력, 자체 제작된 인쇄물의 DM발송에 한함)					
편집 및 지원용역(자세안물관련포에 한함)					
아트디자인 및 그래픽용역					
디자인용역(자체 인쇄할 디자인에 한함)					
감열지					
프린터리벨인쇄리벨에 한함 스티커포함					
(주)전우 이성근	자가 토지 3,300 건물 5,273	3,080	방한피복류(통합방한복,외투)	181	직접
			하운동복(남성용, 여성용)		
			손수건(면수건포함)		
			철모위장포		
			우의(관초포함)		
			잠바		
			팬티(면포플린사각팬티)		
			경찰복		
			철도복		
			남성용조끼		
			소방복 (소방용특수방화복)		
			사원복(맞춤복포함)		
정복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sup>2</sup> )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방석복 배당(배당덮개포함) 반바지 전투복		
(주)전우자활용사촌 (박부웅)	자가 1,763	100	합성수지제창 금속제창(알루미늄에한함)	4	직접

□ 병영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sup>2</sup> )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주)유비와이 울산병영용사촌 (박정동)	임차 767	80	배전반 계장제어장치	19	직접
(주)울산병영용사촌 변압기 복지공장 (박정동)	임차 2,623	30	변압기	15	직접

□ 무궁화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sup>2</sup> )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주)무궁화용사촌 (주석근)	임차 (1629.54)	120	침투성보호의 남자학생복(동,하복) 여자학생복(동,하복) 개인용소형가방 남녀넥타이 의류대 방한복상의내피 방한복상의내피	122	직접

□ 호국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주)엔엠지 (탁경률)	임차	보증금 44 월 5.5	전선제조 및 전선재생가공	16	직접
			알루미늄선		
			나선		
			절연전선 및 피복선		
			제어케이블		
신호케이블					
			전력케이블		
			방열케이블		

□ 한라용사촌

복지공장명 (공장등록대표)	소유형태 (면적, m)	부동산가액 또는 임차료(백만원)	취급물품 (생산품목)	임직원 수	생산 방식
(주)한라용사촌 수처리사업소 (박동신)	임차 (266.350)	1	수처리기기	7	직접
			펌프		
			하수처리장치		
			크레인		



[부록 4]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

국방부와 조달청은 국방부 일반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조달청이 계약 체결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원활한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국방부와 조달청간에 군 일반시설공사를 조달청이 계약 체결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달요청의 범위 및 조달 수수료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달요청의 범위) ①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과 육·해·공군본부를 포함한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중 군용시설 이전공사와 전력부자공사를 제외한 일반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 체결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국방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직접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국방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은 국방부가 본 계약 외 차수계약, 설계변경, 기타 수정계약 사항 등에 관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공사집행계획서의 통보) ①국방부장관은 조달청에 요청할 당해년도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집행계획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집행계획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다.

제4조(조달계획의 게시) 조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조달계획서를 접수하면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다.

제5조(수요기관번호 부여) ①조달청장은 처음 조달 요청하는 국방부 수요기관에 대하여 수요기관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조달 요청부터 당해 수요기관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제6조(조달요청 절차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요청을 한다.

② 조달청장은 조달 요청된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여 사업목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조달청장과 국방부장관은 조달요청과 관련한 공사계약조건, 공사계약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7조(조달수수료등) 시설공사계약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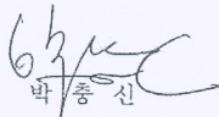
제8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공사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 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국방부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적용규정등)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과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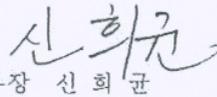
제10조(효력)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조달수수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며, 2006년 1월 1일 공사 계약 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9월 5일

군사시설국장

  
박충신

시설사업본부장

  
신희권

국 방 부 조 달 청

사업평가 16-22(통권 377호)

##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

발간일 2016년 11월 22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749)

---

ISBN 978-89-6073-971-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